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28호

2026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사업 통합 공모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무탄소화, 에너지 자립화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사업 통합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신청 전 반드시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 공고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사업 통합 공모

연번	사 업 명	지원내용	페이지
1	AX실증산단 구축사업	• AX인프라 구축, 기업AX실증지원, 산단AX 마스터플랜 수립, AX얼라이언스 운영 등	p.5
2	스마트물류플랫폼	•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운영,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등	p.25
3	제조AX 산학혁신파크	• 제조AX 산학혁신파크 구축, 재직자 HR-리빌딩 프로그램 운영, 제조 AX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p.37
4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AX실증	p.53
5	엣지AIDC 실증 시범사업	• AIDC 인프라 구축, AI 연산 인프라 도입, 제조특화 서비스 운영, 거버넌스 구축·운영	p.69
6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	• 에너지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별공장의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p.84
7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	•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실증사업장 구축 및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을 통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	p.111
8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산업단지 내 분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및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p.133
9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 부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 설비의 재정적 지원으로 기업 연계 순환이용 촉진	p.147

*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별첨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참조

□ 사업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탄소저감 산업단지 조성

□ 대상산단 : 24개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산단

○ 경기반월시화(국), 경남창원(국), 인천남동(국), 경북구미(국), 광주첨단(국), 전남여수(국), 대구성서(일), 울산미포(국), 부산명지녹산(국), 전북군산(국), 충북청주(일), 충남천안(일), 경북포항(국), 전남대불(국), 대전(일), 전남광양(국), 부산신평장림(일), 인천주안부평(국), 강원후평(일), 경남사천(일), 전북전주(일), 충북충주(일), 충남아산부곡(국), 경남마산(국)

* (국) : 국가산업단지, (일) : 일반산업단지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연번	사 업 명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주체
1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이메일 접수 (smartax@kicox.or.kr)	'26. 6. 8(월) 15시까지	각 사업별 공고문 확인
2	스마트물류플랫폼	이메일 접수 (smartlogi@kicox.or.kr)		
3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이메일 접수 (smartpark@kicox.or.kr)		
4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이메일 접수 (jsh25@kicox.or.kr)	'26. 6. 29(월) 12시까지	
5	엣지AIDC 실증 시범사업	이메일 접수 (5153park@kicox.or.kr)		
6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	방문 접수	'26. 6. 8(월) 15시까지	
7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smartenergy@kicox.or.kr)		
8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energyself@kicox.or.kr)		
9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heejin4332@kicox.or.kr)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제출자료(지류(원본) 및 PDF 전자파일)

❖ 사업별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작성할 것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고객마당→공지사항)

★ 각 사업별 제출양식, 접수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 공고문 확인 필수

3. 통합공모 설명회

□ 일　　시 : ‘26년 5월 6일(수), 13:10 ~ 16:50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홀(대구 동구 첨단로 39)

□ 참석대상 : 사업 참여희망 기관 및 기업

□ 주요내용 : 각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설명 등

□ 세부일정

일 시		세부일정
13:10 ~ 13:20	(10´)	▪ 통합공고 설명회 안내
13:20 ~ 13:40	(20´)	▪ AX실증산단구축사업
13:40 ~ 14:00	(20´)	▪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4:10 ~ 14:30	(20´)	▪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
14:30 ~ 14:50	(20´)	▪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15:00 ~ 15:20	(20´)	▪ 엣지AIDC 실증 시범사업
15:20 ~ 15:40	(20´)	▪ 스마트에너지플랫폼(FEMS 구축)
15:50 ~ 16:10	(20´)	▪ 스마트에너지플랫폼(FEMS+ 구축)
16:10 ~ 16:30	(20´)	▪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16:30 ~ 16:50	(20´)	▪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사업

* 상기 세부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통합공모 설명회 전 사업별 담당자 별도 확인 필요**

4 심사 · 선정

□ **심사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통해 실시

□ **결과통지** : 사업별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사업별 상세공고 내용 문의처)로 문의**

【별첨】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 2026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시행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의 AX 전환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공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자발적 AX 확산 유도를 지원할 『2026년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스마트그린산단에 AI를 접목하여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대·중견·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AX(AI Transformation) 활성화

ㅇ AI 기반 산업 고도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 및 강점을 반영한 산단 맞춤형 AX 선도모델 구축을 통한 자발적 확산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❶ **AX 인프라 구축** (1~4차년도)

- **AI 설비***(HW/SW), **지원센터** 등 **구축 유형별 공용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서버 및 플랫폼, AI 솔루션 S/W, 기업지원 장비 등

❷ **기업 AX 실증지원** (1~4차년도)

-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실증**을 통해 기업이 AI 도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 확보 → 자발적 민간확산** 유도

❸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1차년도)

- 산단별 AI 수요분석, 혁신역량, 기구축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산업단지 AX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❹ **AX 얼라이언스** (1~4차년도)

- **산단 내 수요기업, AI 공급기업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및 AX 실증지원 모델 공유를 통해 **AX 성과 확산**

2 지원규모 및 대상

□ **총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29. 12. 31.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6. 12. 31.까지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공고예산 : 2026년 기준 총 60억 원(산단별 20억 원*, 3개 산단)**

* 컨소시엄당 4년간 정부출연금 140억 내외 지원 예정

(단위 : 억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정부출연금	20	50	50	20	140

※ 정부출연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차년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총 정부출연금 규모 및 연차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연차별 정부출연금의 5% 이내)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산업단지**

ㅇ 전국 14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인천남동, 경북구미, 대구성서, 충북청주, 경북포항, 대전, 전남광양, 인천주안부평, 부산신평장림, 전북전주, 경남사천, 충북충주, 충남아산부곡, 경남마산

□ **지원대상**

ㅇ 사업 유형 무관 3개 컨소시엄 선정(산단 당 최대 1개 컨소시엄)

□ **지원내용**

ㅇ AX 산단 실증 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140억) 대비 **매칭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40% 이상 부담 필수** → **컨소시엄당 56억 원 이상 매칭**

- 지방비(광역/기초) 및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 현물 계상은 세부관리지침 제16조(사업비 산정기준) 및 별표 4(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를 따름

○ 모든 컨소시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얼라이언스 운영 등에 대해 지역본부(지사)와 협업 필요

※ 지역본부가 주관기관일 경우 간접비 산정 가능

※ 해당 산단 내 공단 자산(시설 등) 현물 매칭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역본부의 기관장은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장으로 함

○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재정 자립화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반영 필수

-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성과활용) 현황을 5년 이상 제공해야 함

3 신청자격

□ **추진체계**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참여 N개)**으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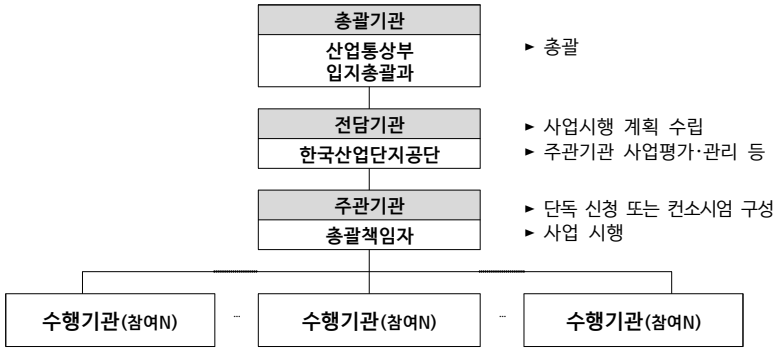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며, 주관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해야 함*

* 본점 또는 분점 소재지 기준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장,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민법」제3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 **참여제한**

○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4 상세사업 내용

1. 지원개요

◇ 대상 산단의 AX가 시급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 지역 특화산업, AX 수준 고려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4가지 필수 과업 수행

◇ 전략 업종과 사업유형에 적합한 1 **AX 인프라 구축**하여 2 **기업 AX 실증지원**을 **특화 기획 · 운영하고** 산단공 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한 3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현장 중심의** 4 **AX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연차별 과업내용(예시)]

1 AX 인프라 구축	+	2 기업 AX 실증지원	▶	3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	4 AX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1~4차년도(특화기획)		1~4차년도(특화기획)		1차년도		1~4차년도

2. 사업유형

- **메뉴판 형태로 제시된 AX 지원사업 유형**(9개) 중에서 응모 컨소시엄이 **지역 산단별 수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 기획**
  - 메뉴판 유형은 혼합형으로 신청 가능(1개 유형 이상 선택 가능)
  - 메뉴판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산단 AX와 관련성.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한 과제는 지원 가능

  *** 아래 작성된 유형별 사업 내용은 산단 필요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AI 모델 등록 및 활용 표준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서 반영 필수***

  *** 전담기관 주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정(연1회)**

< 지원사업 메뉴판 (9개 유형) >

사업유형	사업내용
① 제조 AI 오픈랩	▸ **(개요)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연구기관**이 **AI 기술을 연구, 실증하고 협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실증공간 구축** ▸ **(사업내용)** - AI 기반 기업공유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 플랫폼 개발 - AI 기반 공정개선 실험 및 스마트 제조 기술 적용을 테스트하고, 제조설계/공정 변수를 최적화하는 AI 모델 개발 - AI 제조 기술 공동개발 및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
②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 **(개요) 공정 설비, 공장 내 설비 레이아웃**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AI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 설비 검증,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인프라(HW, SW) 구축 및 운영** ※ 경남창원/경북구미/전남여수/대구성서/반월시화/충북청주 (기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사업 지원지역) 外 지역만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제품 개발, 불량 예측, 설비 검증 등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제조 플랫폼 개발 및 지원공간 구축 * 기존공간 활용 또는 필요시 센터 건축(지방비 등 활용) - AI 시뮬레이션 기술(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제품 설계, 공정 최적화, 불량 예측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③ AX 대표 선도공장	▸ **(개요)** 산단 내 **AX기술을 집적**한 **대표 선도공장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제조혁신 확산**과 **AX기술 상용화** 지원 * 선도모델 확산(성과활용)을 위한 타 기업의 벤치마킹 지원계획 수립필요 ▸ **(사업내용)** ① **(파일럿플랜트)** 실제 공장에 AI 자율제조를 구현할수 있는 실증공장을 구축해 신제품, 공정 테스트 및 검증 ② **(원격공장)** IoT·AI·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 신청 컨소시엄 필요에 따라 ①파일럿플랜트 및 ②원격공장 기술 개별 적용 또는 통합 적용 **(대상 공장은 스마트그린산단 내 소재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 필수)**

사업유형	사업내용
④ 특화망 기반 제조 AI 실증	▸ **(개요) 산업단지 내 주요 업종 및 설비·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공정,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가능한 **특화망 통신(5G, Wi-Fi 등) 인프라를 해당 산단 관리기관 등과 협의하여 구축하고 제조 현장에 실증** ▸ **(사업내용)** - 수요 발굴 및 시범 구역 내 특화망 인프라 설계·구축 - 특화망 구현을 위한 운영·관제 서비스 개발 - 기업 제조현장 특화망 서비스 실증을 통한 확산모델 도출
⑤ 디지털트윈 산단관리 실증	▸ **(개요) 가상공간 기반의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하고, 산업단지 관리 효율화와 입주 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공간, 환경 등 분야별 디지털 트윈 특화 서비스 구현 및 산단 내 실증** ▸ **(사업내용)** - 모니터링 및 분석 요소 도출 및 데이터 연동방안 설계 - 산단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트윈 특화 서비스 개발 - 실시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서비스 운영
⑥ SaaS 기반 제조 AI 서비스	▸ **(개요)** 제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특화업종 맞춤형 제조AI 서비스(SaaS) 개발** 및 **기업지원** ▸ **(사업내용)**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 기반 AI SaaS(서비스형 AI솔루션) 제공(구독 등) * ex) 공정모니터링, 품질예측, 설비이상 탐지 등 - 산단 업종에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 및 기업지원
⑦ AX 종합지원센터	▸ **(개요)** 산단내 제조업체가 **AI기반의 제조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하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기업 AX 수준 진단**, 특화 솔루션 제공, 데모공장 운영 등 ** 수준진단 기준은 전담기관에서 제공 ▸ **(사업내용)** - 기업의 AI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HW, SW 인프라 구축 - 산단 제조기업 AI 적용 설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등 현장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솔루션 서비스 개발 - AX 수준진단 기반 전문가 컨설팅 및 기업지원 - 지원센터 내 AI 기반 제조혁신기술 도입·경험 지원을 위한 특화 산업 맞춤형 AI 데모공장 구축 및 개방형으로 운영 - 기술 실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매칭 사업비를 건축비가 아닌 HW/SW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 사업으로 구축된 센터, 공간의 활용 권장

사업유형	사업내용
⑧ 국가 R&D 연계형	▸ **(개요)**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AI 기술 및 결과물을 산단 인프라와 연계**하여 **성능 검증(테스트베드 구축)**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AX 전환을 유도 ▸ **(사업내용)** - 국가 R&D 사업 개발 기술의 산단 입주기업 현장 적용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AX 실증산단의 공용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조 AI모델 학습·검증 및 고도화 지원 - 검증 완료된 우수 AI 기술을 산단 내 잠재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매칭 프로그램 운영 및 커스터마이징 사업화 연계 지원
⑨ 자유 제안형	▸ **(개요)** 지역 산업단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기획**하며, 데이터 활용 및 AI 접목을 통해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과제를 제안 ▸ **(사업내용)** - 예시) AI 기반 자동 재고관리 솔루션* (해외 선도사례) * 창고 내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를 자율주행하며 재고 스캔, 관리, 실시간 재고 현황 구축

□ [참고사항] 타부처 및 지자체 사업 중복 지원 방지

○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우대

○ 타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동일·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또는 유사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세부사업

1 **(AX 인프라 구축) 국내 솔루션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연산 인프라 및 센서 설비,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AI 개발·운영지원 공간* 및 설비 등 **산단별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핵심 인프라 구축**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 등 건축 관련 비용은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사업제안서에 인프라 도입 및 운영방식, 상세 스펙, 가격 등 필수 제시

○ 선택 유형에 따라 AI 기술을 직접 적용·체감할 수 있는 S/W. H/W 장비를 포함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기술 교류.협업이 가능한 복합 지원 공간 조성

- 제조자산 디지털화 및 구조화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온톨로지*,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등 표준모델 적용계획 제시

* 설비, 공정, 품질, 이벤트 데이터 중심의 산단 공통 데이터 모델 및 관계 정의 체계

○ 정부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통해 **기구축된 DX·AX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2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실증***을 적용, 기업이 AI 도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 확보 및 성과 관리**

○ 기존 솔루션을 적용한 **현장 맞춤형 PoC 성공사례** 도출

기업 AI 실증 및 PoC 가능사례
▲제품·디자인 설계 AI, ▲제조 데이터 AI 적용 예지보전/불량예측/생산최적화, ▲디지털 트윈 적용 생산조건 최적화, ▲품질검사 AI 서비스, ▲AI 에이전트 활용 예측생산 및 생산 관리 제어, ▲생성형 AI 활용 작업자 생산 및 품질관리 효율화 지원, ▲특정 설비 AI 자율 제조 실증서비스(CNC 가공설비 자율공장 구축 등), ▲산단 대표업종 제조공장 완전 AI 자율 제조 공장 구현(다크팩토리) 등

○ 다수 기업 대상 소규모 뿌려주기식 단순 지원은 지양하고 **AI 도입 선도사례**로 홍보가능한 **규모있는 프로젝트성 실증과제** 제시 필요

* 단, 대기업이 수혜기업인 경우(선도공장 등) 자부담 40% 이상 부담 필수

3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특화업종 기반의 AI 수요분석, 혁신역량, 기구축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산단 AX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 데이터 표준, 네트워크 운영, 디지털 트윈기술 적용 등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내 마스터플랜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선정될 경우 1차년도 기간 내 실제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 산단공 지역본부별 **산단 AX 전략수립 담당자를 배정**하여 자료 제공, 기업 조사,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4 **(AX 얼라이언스)** 산단 내 수요기업, AI 공급기업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및 AX 실증지원 모델 공유를 통해 **AX 성과 확산**

* **수도권 소재 AI 공급기업, AX 카라반 참여기업, 초광역협의체**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얼라이언스를 통해 **AX 수준진단, 컨설팅, 수요-공급기업 매칭, 세미나** 등 추진 (산단공 지역본부가 공동간사 역할)

** **얼라이언스는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 산단AX분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산단AX분과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구성하여 신규 과제 발굴·기획 및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5 추진일정

□ **선정절차** : 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예상시기
사업공고(~4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26. 4 .29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8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중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중
↓		
사업계획 고도화* *데이터 운영협의체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선협상대상자	`26. 6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6. 7월 초
↓		
산단 AX 마스터플랜수립 착수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26. 7월 중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데이터 운영협의체 검토필수	수행기관	`26. 12월 중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		
(계속)	**(계속)**	`26. 12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됨

6 선정평가

1. 선정평가 방법

< 선정평가 프로세스 >

신청접수	→	발표평가	→	현장평가 (필요시)
4~6월 중		6월 중		-

1 서면심사(사전검토)

○ **평가위원** : 신청기관(주관·참여 포함) 소속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2 발표평가

○ **평가위원** : 신청기관(주관·참여 포함) 소속이 아닌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접수 현황 고려하여 진행 예정
- 신청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발표순서 결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사업목적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동점일 경우, 평가 기준 중 배점이 높은 (①"사업수행계획", ②"사업목적 및 목표", ③"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합산)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 :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3 현장평가

ㅇ 발표평가 시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필요시 실시**

4 사업계획 고도화

ㅇ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1개월 이내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평가의견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데이터 운영위원회

ㅇ 전담기관은 데이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점검 할 수 있으며, 내용의 보완·개선 요청을 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AI 모델 등록 및 활용 표준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하며,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내용에 대하여 운영회를 통해 점검·검토 받아야 함

※ 위원회 승인 사항에 한하여 목표 수립 및 실적 달성이 인정됨

2.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표)** 사업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신청기관 시설 운영 효율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아래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과정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점수 미부여
- 5극 3특* 정부정책 관련 권역 간 연계·확산체계 구축 및 전략 평가

* 5극 3특 :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으로 나누어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정책

〈 세부평가기준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25점)	ㅇ 사업공고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는가 - 해당 산단 특성 및 산업 현안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5극 3특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는가	15
	ㅇ 목표 및 세부 계획의 명확성/타당성 - 동 사업을 통한 지역의 AX역량 개선 정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세부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한 구조로 구성되었는가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15점)	ㅇ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이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5
	ㅇ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핵심 참여자의 보유 역량이 사업에 적합한가 - 실증 경험, 기술 전문성, 참여율 등 인력 구성이 AX에 강점이 있는가	5
	ㅇ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산단 내 수요조사, 기업 수요 기반 실증과제 도출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는가 - 인프라, 장비, 공간 확보 등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실행 준비가 되었는가	5
사업 수행계획 (40점)	ㅇ 사업 목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 전략에 따른 자원(예산, 인력, 조직 등) 배분과 수행주체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는가 - 5극 3특 권역 간 산업·기술 연계전략을 포함하고 있는가	1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추진 여건 구비 - 일정,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업무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 이행 주체 및 추진방식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차별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가	7.5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 세부과업이 전체 사업목표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가 - 과업 간 연계성과 단계적 추진 구조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기보유 인프라 활용 및 신규 인프라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과업 수행과 적절히 연계되어 계획되었는가	7.5
	ㅇ 적용 기술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적용 기술이 국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자립도/확장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 통신 및 데이터 표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되었는가	5
	ㅇ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 실증성과의 확산 방안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주력산업 침체, 고용·생산 감소에 따른 AX 확산 필요성이 타당한가	10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20점)	ㅇ 사업 종료 후 산단AX 활성화 및 센터 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 가능한 운영모델이 제시되었는가 - 유료서비스, 민간투자 등 지속적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권역 기반 산업 생태계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이 제시되었는가	10
	ㅇ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별 투입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의 실현성이 있는가	7
	ㅇ 매칭금 유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칭금의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3
지역균형발전 (5점)	ㅇ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 -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5(가점)
합계		100(5)

7 근거법령 및 규정

□ 사업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8 설명회 및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6. 6. 8.(월) 15:00限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martax@kicox.or.kr, **PDF 전자파일)**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사업별 지정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내 모든 제출서류 송부 완료할 것

※ 접수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 및 제반 서류(수정제출, 추가자료 등)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USB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ㅇ **사업계획서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목차, 표지 포함)**

-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수행계획, 사업비 등 사업 수행에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할 것

ㅇ 공고상 기재된 제출자료 외 **추가 자료는 접수 불가(부록, 별첨, 영상 등)**

ㅇ 전체 제출자료 **용량은 150MB 이내**로 제한

서류명	서식	대상	비고
①사업 신청서	서식1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②법인정관(원본대조필 날인)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③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④3개년(**'22~'24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출서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⑤최근 3년간('22~'24년) 투자계약서 사본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타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 투자한/투자받은 경우 제출 (별도양식 없음)
⑥확약서	서식2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⑦사업계획서(제안서)	서식3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⑧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⑨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⑩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⑪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연 확약서	서식7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⑫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연 확약서	서식8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⑬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⑭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⑮사업내용 협의서	서식9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 발표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자유양식)하며, 제출일자는 전담기관 별도 안내 예정

□ 지역별 문의처

번호	구분	담당자	연락처
1	인천남동	추경 차장	070-8895-7456
		이지혜 과장	070-8895-7454
2	경북구미	김효진 대리	070-8895-7741
		구유빈 대리	070-8895-7771
3	대구성서	권오성 대리	070-8895-7753
4	충북청주	서일향 차장	070-8895-7641
5	대전	반수현 대리	070-8895-7260
6	경북포항	정재필 대리	070-8895-7601
7	전남광양	이유진 차장	070-8895-7991
8	인천주안부평	김성욱 차장	070-8895-7465
9	부산신평장림	김현서 차장	070-8895-7873
10	전북전주	전성하 대리	070-8895-7986
11	경남사천	오재근 차장	070-8895-7839
12	경남마산	정병철 차장	070-8895-7809
13	충북충주	서일향 차장	070-8895-7641
14	충남아산부곡	김양미 과장	070-8895-7611

□ 접수처

구분	접수 이메일
AX실증산단 구축사업	smartax@kicox.or.kr

9 유의사항

□ 데이터 운영위원회

ㅇ 전담기관은 데이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점검 할 수 있으며, 내용의 보완·개선 요청을 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AI 모델 등록 및 활용 표준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하며,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내용에 대하여 운영회를 통해 점검·검토 받아야 함

※ 위원회 승인 사항에 한하여 목표 수립 및 실적 달성이 인정됨

□ 인프라 활용 및 지원

ㅇ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건물, 장비 등)는 스마트그린 거점산단 또는 연계산단 내에 위치해야 한다.

※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접근성·타당성·공공성 등이 인정되면 산단 외 구축을 승인할 수 있음

ㅇ 기구축된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의 성과물(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필수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유지운영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ㅇ 구축된 성과물의 자립화 방안과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구조 및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단 환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비즈니스모델의 수익구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수익금 활용 방안 및 자립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스마트그린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성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스마트그린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제36조(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에 따라 성과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성과활용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 수익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소한의 유지·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산단 입주기업 지원 및 AX 확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 사업으로 확보되는 데이터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동소유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 요청 시,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산단 간 인프라의 기술적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사업 참여불가

□ **보증보험 가입**

○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불가(매칭금으로 산정가능)

○ 수행기관 중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 불가

□ **사업비**

○ 컨소시엄 내부 거래 및 관계회사(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 집행 불가

○ 본 사업은 연구수당 계상 불가

○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정부출연금은 사무실 임차, 임대, 인테리어, 부지매입,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 **기 타**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요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 별도의 이익을 요구할 경우 문제과제로 판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 운영사업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물류자원 공동 활용 등 스마트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 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물류 최적화 및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효과 제고

□ 사업내용

○ **(필수:물류플랫폼 구축·운영)** 설비제어, 통합관제, 창고·배송·주문관리, 자원공유, SCM 등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 및 물류 데이터 제공*

* 물류 데이터 제공 :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표준기술서(붙임 참조)를 참고하여 개별 산단별 플랫폼(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향후 구축될 통합플랫폼에 데이터 제공 필수

○ **(선택1:물류센터 첨단화)** 기존 산단 물류센터에 ICT가 적용된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물류플랫폼 거점화 및 효율적 이용 촉진

○ **(선택2: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운영

* 예시 : 민간기업 창고 공유화 등

▪ 필수항목(물류플랫폼 구축·운영)은 반드시 포함하고, 선택항목(물류센터 첨단화,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은 하나 이상 선택하여 추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총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8. 12. 31.까지

○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6. 12. 31.까지

□ 대상 산업단지

○ 충북충주, 충남아산부곡, 경남마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연계산단 포함)

□ 사업비 규모 : 3년간 정부출연금 총 50억원 내외 (산단별)

○ 1차년도 예산 : 10억원 (산단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합 계
정부출연금	10	30	10	50

※ 차년도 예산규모 변경 시 변경협약을 통해 사업비 및 추진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형태

○ 산업단지 스마트물류 플랫폼 설계·구축·운영 및 물류센터 첨단장비 도입, 입주기업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등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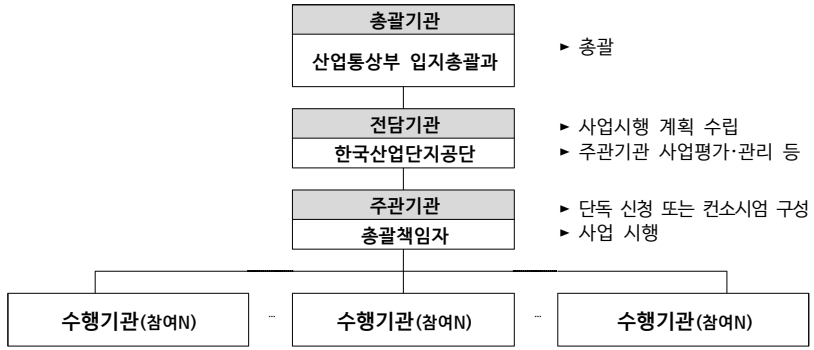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산단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참여기관은 IT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ㅇ「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업 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조에 따른 교통물류운영자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사업자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 **지원내용**

ㅇ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플랫폼 설계·구축·운영 비용, 산업단지 물류센터 첨단장비 도입, 입주기업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비용 등

※ 국비는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비용(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되지 않음

□ **지원대상** : 산단별 각 1개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50억) 대비 **매칭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10% 이상 부담 필수**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 등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ㅇ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센터 재정 자립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성과활용) 현황을 최소 5년 이상 제공해야 하며 협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특정 기간을 협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사업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 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전담기관)	'26. 4 .29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8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중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중
↓		
수행기관(단지포함) **확정**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6. 7월 초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6. 7월 중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26. 12월 중
↓		
중간점검 *연중 1회 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26. 12월 ~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수행기관	'26. 12월 ~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계속)	(계속)	(계속)

※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전담기관이 조정 가능하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지 예정,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예정임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ㅇ 평가방법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아래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과정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점수 미부여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①서면심사 (사전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발표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7명 내외) ▹ 사업목표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1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평가의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 소속인 경우 2. 위원 본인의 소속기관과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에 속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사 필요시,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내용)</th><th>배 점</th></tr>
<tr><td>사업목적
(10)</td><td>• 해당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생태계 기반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전략 및 연차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 등</td><td>10
(정성평가)</td></tr>
<tr><td rowspan="2">추진체계
및
수행역량
(15)</td><td>•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 실적요건 : 물류관련 설계·컨설팅, 물류시스템 개발, 물류자동화 설비 구축, 물류로봇 구축사업 단일건 기준 5억원 이상 또는 물류서비스 사업실적(매출액) 단일건 기준으로 10억원 이상</td><td>5
(정성평가)</td></tr>
<tr><td>• 추진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스마트 물류플랫폼 서비스 개발 계획, 운영 전담인력 확보 계획 등
* 산단별 특성(업종 등) 및 입주기업 수요 반영 계획</td><td>10
(정성평가)</td></tr>
<tr><td>사업
수행계획
(30)</td><td>•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물류서비스 개발·제공계획 우수성
* 산단별 특성(업종 등) 및 입주기업 수요 반영 계획
• 스마트 물류플랫폼 서비스 실증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실증 프로젝트 추진계획,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등
• 스마트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프로젝트 확산방안의 우수성
* 실증프로젝트 결과 확산(스마트산단→주변산단) 가능성
• 표준기술서 반영한 플랫폼 구축 계획
• 화주사 확보 실적(증빙자료 첨부)</td><td>30
(정성평가)</td></tr>
<tr><td>성과지표
및 목표
(20)</td><td>•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차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능한 목표 설정
• 성과목표 관리 및 달성전략, 기대효과 등의 현실성</td><td>20
(정성평가)</td></tr>
<tr><td rowspan="2">사업비
사용계획
(25)</td><td>•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table>
<tr><td>비율(%)</td><td>10이상
~20미만</td><td>20이상
~30미만</td><td>30이상
~40미만</td><td>40이상
~50미만</td><td>50이상</td></tr>
<tr><td>평가점수</td><td>1</td><td>2</td><td>3</td><td>4</td><td>5</td></tr>
</table></td><td>5
(정량평가)</td></tr>
<tr><td>• 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주요 평가요소: 중장기 사업으로의 발전방향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항목별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부담금 유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td><td>20
(정성평가)</td></tr>
<tr><td colspan="2">합계</td><td>100</td></tr>
</table>

4 근거법령 및 규정

□ 사업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한 : 2026. 6. 8.(월) 15:00限**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martlogi@kicox.or.kr, **PDF 전자파일)**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사업별 지정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내 모든 제출서류 송부 완료할 것

※ 접수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 및 제반 서류(수정제출, 추가자료 등)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USB 접수 불가(방문, 우편접수 불가)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ㅇ **사업계획서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목차, 표지 포함)**

-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수행계획, 사업비 등 사업 수행에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할 것

ㅇ 공고상 기재된 제출자료 외 **추가 자료는 접수 불가(부록, 별첨, 영상 등)**

ㅇ 전체 제출자료 **용량은 150MB 이내**로 제한

서류명	서식	부수	대상	비고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② 법인정관(원본대조필 날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④ 3개년(**'22~24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출서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⑤ 최근 3년간('22~24년) 투자계약서 사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타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 투자한 경우만 제출(별도양식 없음)
⑥ 확약서	서식2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⑦ 사업계획서(제안서)	서식3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⑧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⑨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⑩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⑪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7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⑫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8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⑬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⑭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⑮ 선정평가 발표자료	-	-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 사업문의처

① 충남아산부곡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 **접수 및 문의** : 충남당진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당진디지털전환팀 윤일규 차장
- **(전화)** 070-8895-7389

② 충북충주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 **접수 및 문의** : 충북지사 서일향 차장
- (전화) 070-8895-7641

③ 경남마산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 **접수 및 문의** : 경남마산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경남마산디지털무탄소팀 임재희 차장
- **(전화)** 070-8895-7721

□ 사업접수처

구분	접수 이메일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	smartlogi@kicox.or.kr

6 기타 유의사항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성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세부관리지침 제36조에 따라 성과활용에 협조해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사업('26~'28) 완료후 5년간('29~'33) 필수 운영 및 산업단지 물류데이터 공유에 협조해야 한다.
-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단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사업결과에 확보되는 데이터는 수행기관 및 참여한 공공기관의 공동소유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또한, 전담기관의 요청 시, 스마트물류플랫폼 등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ㅇ 향후 구축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적용해야 한다.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 **보증보험 가입**

ㅇ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불가(매칭금으로 산정가능)

□ **인프라 활용 및 지원**

ㅇ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건물, 장비 등)는 스마트그린 거점산단 또는 연계산단 내에 위치해야 한다.

※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접근성·타당성·공공성 등이 인정되면 산단 외 구축을 승인할 수 있다.

□ **사업종료 후 유지운영 방안 제시**

ㅇ 구축된 성과물의 자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수익 구조 및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타**

ㅇ 산단 사업별 접수처가 다르며, 중복지원 시 해당 접수처에 신청서류 각각 제출

ㅇ 사업접수처에 제시된 메일로 15시까지 제출된 자료만 인정하며 기한 외 제출된 자료, 사업담당자 메일로 자료 제출 등 다른 곳으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미제출된 것으로 본다.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현장 중심의 실증-인재-데이터 연계를 통한 중소 제조 기업의 AI 전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 AI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공간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실증-인재-데이터 연계를 통한 중소 제조 기업의 AI 전환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제조AX 산학혁신파크 구축)** 지역 혁신 기관 등의 기존 공간 활용하여 관련 공용 인프라 구축 및 협력과제 발굴·수행

○ **(재직자 HR-리빌딩 프로그램 운영)** AI 친화적 인적자원(HR) 재편 및 재직자 관련 교육과정 설계·운영

○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실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축적·표준화하여 설계 및 데이터셋 구축

구 분	세부내용
제조AX 산학 혁신파크 구축	• 旣 공간을 활용하여 물리적 협업공간을 조성하고, 공용 인프라 구축 •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연 협력과제 발굴·수행
재직자HR-리빌딩 프로그램 운영	• AI 친화적인 직무설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업의 AI 활용 역량 강화 • 수료자 역량 인증, 성과측정체계 구축 및 운영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 생성데이터를 축적·표준화하고, 산단별 주력업종에 특화된 대표 데이터셋 구축 • AX 수요·공급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운영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총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8. 12. 31.까지

○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6. 12. 31.까지

○ 사업기간 종류 후 성과 활용 기간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대상 산업단지

○ 충북충주, 충남아산부곡, 경남마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연계산단 포함)

□ 사업비 규모 : 3년간 정부출연금 총 60억원 내외 (산단별)

○ 1차년도 예산 : 20억원 (산단별)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합 계
정부출연금	20	20	20	60

※ 차년도 예산규모 변경 시 변경협약을 통해 사업비 및 추진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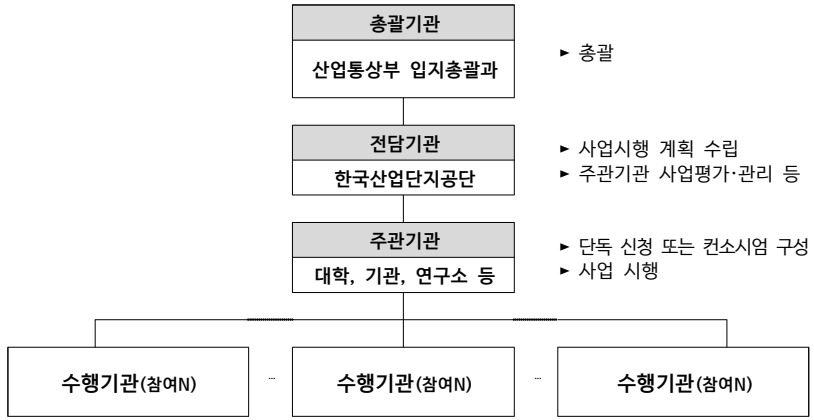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ㅇ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며, 주관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해야 함*

* 본점 또는 분점 소재지 기준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장,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민법」제3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 지원내용

ㅇ 산학혁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재직자 AI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비용 등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지원대상** : 산단별 1개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60억) 대비 **매칭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10% 이상 부담 필수**

ㅇ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 등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ㅇ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재정 자립화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성과활용) 현황을 최소 5년 이상 제공해야 하며 협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특정 기간을 협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상세사업 내용

□ 지원개요

◇ 산단별 주력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① **제조AX 산학혁신파크 구축**을 통해 공용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고, ② **재직자 HR-리빌딩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인적자원을 AI 친화적으로 재편, ③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실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축적·표준화하여 기업 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부내용

1 **제조AX 산학혁신파크 구축**

ㅇ **지역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기술기업 등), **산학융합원** 등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물리적 협업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 산·학·연 협력을 통한 **AX솔루션 개발 및 도입 실증,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위한 **공용 인프라 구축**(고성능 GPU, 통신망, IoT센서 등)
-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수요 기반 AI PoC, AI 알고리즘 개발 등 **산·학·연 협력과제** 발굴·수행

< 산학연 협력과제 예시 >

- **공정 최적화, 이상 탐지, 예지 정비** 등 현장 맞춤형 AX 알고리즘 개발
- 비전 검사·무게·온도 등 **센서 데이터 연동**을 통한 **AI 품질검사 라인 구축**
- 노후 생산설비의 **리트로핏**을 통한 **physical AI 도입**
- **노코드 기술을 활용**한 생산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 관리 도구 개발
- 업종특화 주요 공정단계의 PoC 수행이 가능한 실증용 파일럿 라인 구축

ㅇ 산학혁신파크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 기업, 연구소, 엑셀러레이터 등 혁신자원을 집적·연계하는 허브로 기능

* PoC 공모전, 오픈이노베이션 등 협력 확산 프로그램 정기적 추진

2 **재직자 HR-리빌딩 프로그램 운영**

ㅇ 단순 교육을 넘어 기업 인적자원(HR) 체계를 AI 친화적으로 재편하여, 기업의 AI 활용 내재적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AX 기반 마련

-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기업별 AI 수준 격차를 고려하여 재직자 직무설계 및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단계	운영방안(안)
기초	ㅇ 기본 직무변화 이해 제고를 위한 워크숍, 사례중심 교육
응용	ㅇ 심화직무 및 문제해결 훈련 중심 교육 ㅇ 로봇공학, 자동화 시스템 등의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ㅇ 기업의 직무설계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고급 기술교육 ㅇ 데이터 분석 툴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방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교육형 프로그램)** 다양한 방식의 HR-리빌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 외 활동을 통한 직무 재설계 및 인재 역량 고도화를 지원

* PoC 프로젝트 수행, OJT(현장교육), 컨설팅, 멘토링, CoP(실무 학습 공동체) 등

ㅇ **(성과측정)** 교육 성취도 제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수료자의 AI 역량 인증체계*와 교육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 (NIA) AI 챔피온 배지

3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ㅇ 산학혁신파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표준화하여, 산단 내 **AX 수요·공급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운영**

- **(아키텍처 설계)** 다양한 소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 적재, 표준화,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관리와 보안·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아키텍처 설계
- **(데이터셋 구축)** 산단별 주력업종(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등)에 특화된 대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업종별 AI 학습·실증에 활용

* 자동차(용접/도장 공정 이미지), 조선(비파괴검사 NDT 데이터), 전자(SMT 공정 데이터), 기계(CNC 설비 진동/소음 데이터) 등

ㅇ **(신사업 발굴) 데이터 공급-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통해 제조 AX 도입 및 데이터 거래 구조 마련

4 사업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 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사업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전담기관)	`26. 4 .29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8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중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중
↓		
수행기관(단지포함) **확정**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6. 7월 초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6. 7월 중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26. 12월 중
↓		
중간점검 *연중 1회 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26. 12월 ~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수행기관	`26. 12월 ~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계속)	(계속)	(계속)

※ 평가, 선정 등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전담기관이 조정 가능하며, 조정될 경우 사전 통지 예정,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예정임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구 분	단계별 주요내용
①서면심사 (사전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발표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7명 내외) ▹ 사업목적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1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평가의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 소속인 경우 2. 위원 본인의 소속기관과 신청(주관·참여 포함)기관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강원후평, 경남사천, 전북전주)에 속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사 필요시, 서면·발표평가시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 점
사업목적 및 목표 (10)	ㅇ 사업공고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는가 - 해당 산단 특성 및 산업 현안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5
	ㅇ 목표 및 세부 계획의 명확성/타당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세부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한 구조로 구성되었는가	5
신청기관 수행능력 (35)	ㅇ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이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10
	ㅇ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핵심 참여자의 보유 역량이 사업에 적합한가	10
	ㅇ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산단 내 수요조사, 기업 수요기반 과제 도출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는가 - 인프라, 장비, 공간 확보 등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실행 준비가 되었는가	15
사업 수행계획 (35)	ㅇ 사업 목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 전략에 따른 자원(예산, 인력, 조직 등) 배분과 수행 주체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는가	1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추진 여건 구비 - 일정,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업무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 이행 주체 및 추진방식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차별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가	10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 세부과업이 전체 사업목표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가 - 과업 간 연계성과 단계적 추진 구조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기보유 인프라 활용 및 신규 인프라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과업 수행과 적절히 연계되어 계획되었는가 - 데이터 구축 및 운영·활용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ㅇ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확산 방안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5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20)	ㅇ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별 투입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의 실현성이 있는가	10
	ㅇ 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가능한 운영 모델이 제시되었는가 - 유료 서비스, 민간투자 등 지속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5
	ㅇ 매칭금 유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칭금의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5
합계		100

5 근거법령 및 규정

□ 사업근거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6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한 : 2026. 6. 8.(월) 15:00限**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martpark@kicox.or.kr, **PDF 전자파일)**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사업별 지정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내 모든 제출서류 송부 완료할 것

※ 접수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 및 제반 서류(수정제출, 추가자료 등)는 사유를 불문하고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USB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ㅇ 사업계획서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목차, 표지 포함)

-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수행계획, 사업비 등 사업 수행에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할 것

ㅇ 공고상 기재된 제출자료 외 추가자료는 접수 불가(부록 별첨, 영상 등)

ㅇ 전체 제출자료 용량은 150MB 이내로 제한

서류명	서식	부수	대상	비고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② 법인정관(원본대조필 날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④ 3개년(**'22~24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출서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⑤ 최근 3년간('22~24년) 투자계약서 사본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타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 투자한 경우만 제출(별도양식 없음)
⑥ 확약서	서식2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⑦ 사업계획서(제안서)	서식3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⑧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⑨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⑩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⑪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7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⑫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8	1부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⑬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⑭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1부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⑮ 선정평가 발표자료	-	-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 사업문의처

☞ **접수 및 문의** : 산단AI전략실 산단AI전환팀

- **(전화)** (윤혜원 차장) 070-8895-7370, (김근욱 대리) 070-8895-7218

□ 사업접수처

구분	접수 이메일
제조AX 산학혁신파크사업	smartpark@kicox.or.kr

7 기타 유의사항

□ **(성과목표) 사업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구체적 목표 설정**

- ㅇ 신청기관은 사업내용의 전략과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설정 및 제시
- ㅇ 제시한 성과목표는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 최종목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성과 목표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최소 2개 이상의 성과목표로 구성

□ **(성과지표) 성과 목표별 달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평가 가능한 형태의 계량지표 발굴 및 설정**

- ㅇ 신청기관은 "SMART" 기준을 준수하여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하도록 성과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 ㅇ 성과 목표별 최소 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하나의 성과 목표에 복수의 성과지표 설정도 가능

〈성과지표 설정 기준〉

구분	내 용
S(Specific)	ㅇ 명확성 :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모호하지 않아야 함 - 지표명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 지표의 측정산식, 측정대상기간 등이 명확해야 함 - 제3자가 사업을 파악하기에 용이해야 함
M(Measurable)	ㅇ 측정가능성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함 -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해야 함 - 수집 또는 생산이 가능해야 함 - 수집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정수준이어야 함
A(Attributable)	ㅇ 원인성 : 사업 수행내용과 명확히 연계되어야 하고(인과성), 사업의 범위(대상, 예산)를 넘지 않아야 함
R(Reliable)	ㅇ 신뢰성 : 재측정하거나 제3자가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고, 정성지표의 경우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T(Timely)	ㅇ 적시성 :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대상기간과 평가 대상 기간이 일치해야 함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6차), KISTEP(2024)

- ㅇ 성과지표는 도전적으로 설정하되, 설정 근거 및 측정산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연도별 달성 목표를 반드시 설정

□ **성과지표 (공통지표 및 특화지표 예시)**

유형	성과지표명	정의
제조AX 산학혁신파크 구축	**ㅇ (공통) 공용 인프라 활용 건수(건)**	**ㅇ 공용 인프라 활용 기업 수(기업 수/년)**
	ㅇ (공통) 공동연구·실증(건)	**ㅇ 제조 AI오픈랩 활용률, 공동연구 및 실증 등 이용 건**
	ㅇ (공통) 기술사업화 건수(건)	**ㅇ 실증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된 기술 건수**
	ㅇ 공용 인프라 구축률(%)	ㅇ 목표 공용 인프라 사양 대비 구축 완료 정도
	ㅇ 혁신파크 활성도(건)	ㅇ 산학혁신 파크 내 입주기관·기업 수
	ㅇ 공용 인프라 가동률(%)	ㅇ 구축된 인프라 대비 실제 가동 정도
재직자HR-리빌딩 프로그램 운영	**ㅇ (공통) 교육 만족도(%)**	**ㅇ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ㅇ (공통) 교육수료 인원(명)	**ㅇ 교육 프로그램 수료 인원(재직자)**
	ㅇ 교육 효용성(%)	ㅇ 교육 신청 및 이수자 대상 교육 전후 AX 수준진단 결과 분석 및 향상도 측정
	ㅇ 전문가 양성도(%)	ㅇ 전체 교육 이수자 대비 디지털 배지 발급 및 전문가 Pool 등록 비율
	ㅇ 현장 활용도(%)	ㅇ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현장 활용도 조사 결과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제공	**ㅇ (공통) 대표 데이터 구축 규모(건)**	**ㅇ 업종별 레퍼런스 데이터셋 구축·등록 건수**
	ㅇ (공통) 데이터 활용 활성도(%)	**ㅇ 데이터 라이브러리 내 데이터 제공 기업 수 대비 활용 기업 수**
	ㅇ 등록 데이터(TB)	ㅇ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축적 및 등록된 데이터 총량
	ㅇ 데이터 품질(%)	ㅇ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검증을 통한 수준 분석 결과
	ㅇ 데이터 거래 성사율(%)	ㅇ 데이터 라이브러리 기반 거래·매칭 성사 비율

※ **(공통)지표는 반드시 KPI로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그 외 제시된 지표는 특화 지표로서 사업 내용에 따라 활용가능 (상기 지표 외 특화지표 설정 가능)

□ **인프라 활용 및 지원**

ㅇ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건물, 장비 등)는 스마트그린 거점산단 또는 연계산단 내에 위치해야 한다.

※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접근성·타당성·공공성 등이 인정되면 산단 외 구축을 승인할 수 있다.

ㅇ 기구축된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의 성과물(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필수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성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제36조(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에 따라 성과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금의 사용목적 및 계획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사업으로 확보되는 데이터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동소유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 요청 시,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산단 간 인프라의 기술적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경우 사업 참여불가

□ **보증보험 가입**

ㅇ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불가(매칭금으로 산정가능)

ㅇ 수행기관 중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 불가

□ **사업비**

ㅇ 컨소시엄 내부 거래 및 관계회사(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 집행 불가

ㅇ 연구수당 계상 불가

ㅇ 정부출연금은 사무실 임차, 임대, 인테리어, 부지매입,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ㅇ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 **기 타**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제안요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026년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AX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단 내 5G 특화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AX실증을 지원하고자 『**2026년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 기반 구축과 AX실증 지원으로 제조 현장의 AI활용 확산 및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28. 12. 31.까지

□ 예산규모 :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105억원, 매칭금 45억)

□ 선정방법 : 공모(1개 컨소시엄 선정)

□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5G 특화망 인프라	산업단지 공유형 5G 코어 구축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 또는 개별기업 내 무선 기지국 구축
	주파수 할당을 위한 행정적 준비 및 실행
통합운영시스템	구축된 5G 특화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AX실증 지원	① 산업단지 공공분야 AX실증 (예시) 산단 내 일정구역 AI 자율주행 등
	② 입주기업 범용 AX실증 (예시) AI활용 작업 매뉴얼 구축, 프로젝트 AI관리 등
	③ 개별기업 특화형 AX실증 (예시) AI품질검사 서비스, AI기반 예지보전 등
거버넌스	산업단지 5G 특화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지원규모 및 대상

□ **총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28. 12. 31.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6. 12. 31.까지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예산규모 : 총 사업비 150억원(국비 105억원, 매칭금 45억원)**

ㅇ 당해연도 총 사업비 대비 매칭비는 30%, 현금 부담 비율 50% 이상 필수

- 지방비(광역/기초) 및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 현물 계상은 세부관리지침 제16조(사업비 산정기준) 및 별표 4(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를 따름

(단위 : 억 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정부출연금	20	45	40	105

※ 정부출연금은 차년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총 정부출연금 규모 및 연차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연차별 정부출연금의 5% 이내)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 인테리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대상 산업단지**

ㅇ 전국 24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연계 지역(산단)

-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남대불, 경북포항, 대전, 전남광양, 인천주안부평, 부산신평장림, 강원후평, 전북전주, 경남사천, 충남아산부곡, 충북충주, 경남마산자유

□ **지원내용**

ㅇ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AX실증지원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3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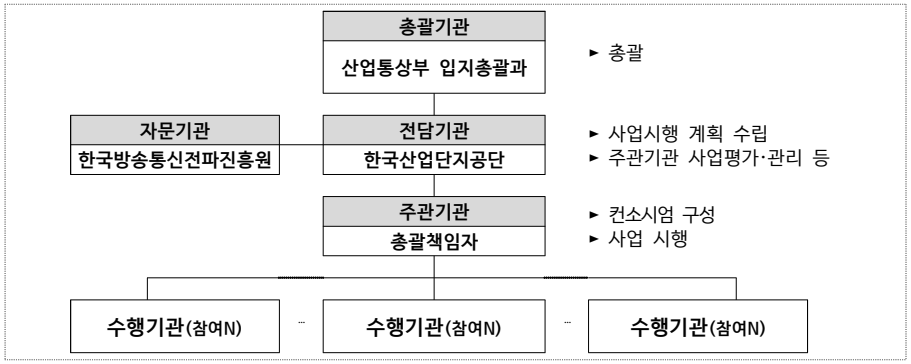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사업 세부 기획, 공모 및 평가·선정 위원회 운영 총괄 ▪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국비 교부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사업 진도 점검,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총괄
자문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및 운영 자문
주관기관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자체)	▪ 컨소시엄 운영 총괄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이행 책임 ▪ 지방비 확보 및 민간 투자 자금 조달 총괄 ▪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및 AX실증 추진 현황 관리 ▪ 인프라 자립화 운영 및 입주기업 대상 인프라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산단 5G 특화망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참여기관 (기간통신사업자)	▪ 5G 특화망 인프라 설계·시공(5G 코어, 무선 기지국 등) ▪ 주파수 할당, 무선국 심사 등 특화망 관련 행정 인허가 전반 수행 ▪ 5G 특화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G 특화망 인프라 유지보수
참여기관 (지역혁신기관, AI·SW 기업, 연구기관 등)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AX실증을 위한 계획 수립 ▪ AX실증을 위한 수요기업 발굴, 제조공정 분석, 도입 서비스 발굴 ▪ 5G 특화망을 활용한 AX실증 성과 검증 및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산단 5G 특화망 운영위원회	▪ (구성) 전담기관, 컨소시엄, 산단 입주기업 대표사, 전문가 등 ▪ (역할) 5G특화망 운영방안 마련(운영·유지보수·요금제 등), 수익금 관리 감독, 성과지표 점검, 기간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등

4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수행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 **(주관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참여기관)** 5G특화망 구축·운영 및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 사업자는 필수 참여해야 하며, 지역혁신기관, AI솔루션 기업 등 AX실증 서비스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₁ 5G 특화망 구축·운영 기간은 사업기간(3년) + 성과활용기간(5년)이 필수임

※₂ 5G 특화망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이동통신 3사 기준 >

o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235호)에 따라 상용주파수를 할당 받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 **참여 제한**

ㅇ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지원 내용

▪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 (1차년도)
  ① 산업단지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네트워크 및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② 공유형 5G 코어 설계 및 구축, 개별 기지국 구축 계획 수립
  ③ AX 실증 대상 수요기업 현황 파악, 분석 및 실증 모델 적용 계획 수립
  ④ 주파수 할당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
  ⑤ OO산업단지 5G 특화망 운영위원회(가칭) 구성
- (2차년도)
  ① 공유형 5G 코어 성능 검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② 산업단지 일정 구역 또는 수요기업 내 기지국 구축
  ③ 구축된 특화망을 활용한 분야별 AX실증
- (3차년도)
  ① AX 실증성과 제고 및 검증, 산단 내 실증 모델 확산 방안 마련
  ② 구축된 특화망 지속활용을 위한 운영 모델 고도화 계획 수립

※ 연차별 사업 내용은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산업단지 5G 특화망 구축 · 운영

ㅇ **(코어 공유형 특화망 구축)** 다수의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코어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 또는 개별기업 내 CU-DU-RU 등을 구축하여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 최신 5G 표준화 규격,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가상화 등 AI-RAN, 지능형 기지국 기술·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최신 5G 기술 적용·고도화 방안 제시

- 차세대 특화망 인프라 구축 범위(커버리지 등) 및 세부 구성도, 제안 장비·시스템의 특장점을 제시하고 최적의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국책과제 진행 시 관련 장비는 국산 장비 사용을 권장

- 구축 인프라에 대한 성능·품질 검증방안, 보안성·안정성 확보방안 구체적 제시

- AX 실증을 위해 수요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확장성 등 연계 구축·운영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 충분한 AX 실증기간 확보를 위해 관련 구성 장비/시스템 조달 및 납품, 설치, 성능 최적화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특화망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5G 특화망 도입유형,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대상, 도입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등의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파수 할당 시에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신청

o **(정량적 목표 설정)** 구축되는 5G 특화망 인프라의 성능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 및 검증 필수

o **(성과관리)** 연차별 5G 특화망 도입기업 수 목표치 제시, 도입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망 사용을 통한 도입기업의 정량적 성과 및 관리방안 제시

※ 기업 통신료 절감, 데이터 활용 증가 등 특화망 도입으로 인한 성과 제시

2. AX실증

o **(유형별 AX실증)** 구축되는 5G 특화망을 활용하여 제시된 AX지원 유형 중에서 응모 컨소시엄이 지역 산단별 수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 기획

- 유형은 혼합형으로 신청 가능

- 제시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특화망을 활용한 AX실증과 관련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한 과제는 지원 가능

- (목표 및 성과) 사업 신청 시 연차별로 AX실증기업 수, 실증분야, 도입모델, 실증에 따른 정량적 성과(전후 비교) 제시

o **(지원 유형)** 공공분야, 범용, 특화형 3가지 유형으로 AX실증 지원

<5G 특화망 활용 AX 실증 유형 >

사업유형		사업내용
①	**산업단지 공공분야 AX실증**	▸ **(개요)** 산업단지 일정구역 내 공공분야 AX실증 ▸ **(사업내용)** 산단 내 AI 기반 자율주행 실증, 산단 내 안전을 위한 AI 기반 순찰 로봇 활용 실증 등 산업단지 차원의 공공 목적의 AX실증
②	**도입기업 범용 AX실증**	▸ **(개요)** 다수의 입주기업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모델 실증 ▸ **(사업내용)** AI 활용 생산관리, 공장 내 작업 메뉴얼 구축, 경영관리 등 다수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모델 실증
③	**개별기업 특화형 AX실증**	▸ **(개요)** 개별 기업 공정 내 AI를 활용한 자율제조 실증 ▸ **(사업내용)** AI품질검사 서비스, 특정 설비 AX 자율제조 구축, AI 기반 예지보전/불량예측/생산최적화 등 개별 기업 내 AX실증

※ 개별기업 특화형 AX실증 20개사 이상 필수 수행

o **(지원 규모)** 수요기업 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수행

- 공공분야 및 범용 AX실증은 별도 사업 규모 제시, 대기업 참여 시 AX실증 비용의 자부담 40% 이상 부담 필수

3.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o **(특화망 관리)** 5G 특화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된 5G 특화망 시스템에 대한 관제, 보안, 유지·보수,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방안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산업단지 5G 특화망 운영위원회(가칭) 구성 · 운영

o **(조직 구성)** 구축되는 인프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문제 발생(특화망 서비스 애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따른 대응 방안, 자립화 방안, 특화망 및 AX실증성과 확산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도입기업, 지자체, 수행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5. 스마트그린산단 및 AX실증산단 등 타사업 연계

o **(연계 방안)** 5G 특화망 구축 시 기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및 AX실증산단 사업과 연계방안을 제시

6 추진일정

□ **선정일정** : 사업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예상시기
사업공고(~6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26. 04. 29.
↓		
공모설명회	한국산업단지공단	‘26. 05. 06.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29.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7월 초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7월 초
↓		
사업계획수정(내용, 예산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문기관, 수행기관	’26. 7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6. 7월 말
↓		
사업 착수	수행기관	‘26. 8월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수행기관	‘26. 12월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계속)	**(계속)**	**(계속)**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됨

7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검토**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자격요건, 참여 제한 여부, 매칭금 현황 등 평가 자격에 대한 서류 검토

□ **선정평가**

ㅇ **평가위원** : 신청기관(주관·참여 포함) 소속이 아닌 전문가 7인으로 구성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사업목적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동점일 경우, ①정부출연금 대비 매칭비 비율, ②중소기업 참여율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결과** : 최고 점수를 득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현장실사**

ㅇ 발표평가 시 미흡·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필요시 실시**

□ **사업계획 고도화**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이 구성한 자문단을 통한 과업 내용,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내역 보완

□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성평가 (80)	사업필요성,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0)	ㅇ 사업 필요성 및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 해당 산단 특성 및 산업 현황에 따른 5G 특화망 도입 및 AX실증 필요성 - 지역균형성장 정책에 따른 지역산단 내 5G 특화망 도입 타당성 - 스마트그린산단 및 AX실증산단과의 연계성	10
		ㅇ 목표, 계획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연차별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인프라 구축 및 AX실증의 구체적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도전성 - 주파수 확보방안, 법·제도적 제약사항과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구축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우수성 (20)	ㅇ 적용되는 5G 특화망 기술 구성의 우수성 - 산단 단위의 5G 특화망 네트워크 구성의 적절성 - 4.7㎓, 28㎓ 표준화 장비 도입 및 핵심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의 적절성	8
		ㅇ 구축되는 특화망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 구축되는 특화망의 성능·품질 확보 방안의 구체성 - 서비스 제공 시 문제 발생(통신 장애 등)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지보수 방안(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포함)	12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20)	ㅇ 추진조직 및 체계, 수행역량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체계의 적절성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인력 구성, 참여율, 수행업무의 명확성	8
		ㅇ 차별화된 특화망 구축 방안 및 AX실증 수행 능력 - 특화망 구축의 차별성(보안, 이중화, 가상화 방안 등) - AX실증을 위한 보유 솔루션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 AX실증 도입을 위한 기업의 현황 분석 방법 및 모델 도출 방안	12
	파급효과 및 지속활용계획 (20)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망 및 AX실증 활용·확대 방안 - 5G 특화망 및 AX실증 성과 확산에 따른 지역 산단 파급효과	10
		ㅇ 5G 특화망 지속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 - 서비스 지속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비용/수익 구조의 적정성 - 안정적인 특화망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안 ㅇ AX실증 성과 제고 및 산단 내 확산 방안 - 실증을 통한 성과의 확산 가능성, 성과 홍보·이행 계획의 적정성	10
정량평가 (20)	수행능력	ㅇ 5G 특화망 기 구축 실적 - 1~2건 : 3점 / 3~4건 : 5점 / 5건 이상 : 8점	8
	재원확보	ㅇ 매칭금 중 현금 확보 비율 - 50% 이상 : 3점 / 60% 이상 : 4점 / 70%이상 : 5점	5
	수요발굴	ㅇ 특화망 구축 및 AX실증 수요기업 발굴 실적 - 1~10개사 : 3점 / 11~20개사 : 5점 / 20개사 초과 : 7점	7
합 계			100
가점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 인구 소멸 대응 등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 준공 20년 이상 경과 노후산단 : 1점 - 비수도권지역 2점	3
	AX 준비도	• AX 실증산단 해당 산단	2

※ 본 평가지표에서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우선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9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6. 6. 29.(월) 12:00限**

* 접수기한 이후 제출 자료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PDF 전자파일)**

ㅇ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하고, 한글 등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료와 제출

* PDF 파일은 제출 서류명에 따른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必

**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제출(자유양식)하며, 제출일자는 전담기관 별도 안내 예정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 30분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제출서류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1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직인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서식2	1부	주관+참여	
3. 참여인력 전체현황	서식3	1부	주관+참여	
4.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각1부	주관+참여	참여제한 여부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1부	주관	수행기관 대표자 직인
6.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각1부	주관+참여	참여자 자필 서명
7.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7	1부	주관+참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증빙자료 (참여의향 공문 등)
8. 유사사업 수행실적표	서식8	1부	주관기관	
9. AX 실증 수요기업 참여 확약서	서식9	각1부	주관기관	수요기업 대표자 직인
10. 사업계획서	서식10	1부	주관기관	
11. 정성·정량평가 항목 조견표	서식11	1부	주관기관	
12. 법인정관	-	각1부	주관+참여	
13.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4.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 제출
1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6.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자체양식	각1부	주관기관	
17.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 컨소시엄 구성 문의처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내 산단진흥팀으로 문의

□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이메일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jsh25@kicox.or.kr	070-8895-7046
		070-8895-7619

10 유의사항

□ 데이터 운영위원회

ㅇ 전담기관은 데이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점검 할 수 있으며, 내용의 보완·개선 요청을 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AI 모델 등록 및 활용 표준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하며,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내용에 대하여 운영회를 통해 점검·검토 받아야 함

※ 위원회 승인 사항에 한하여 목표 수립 및 실적 달성이 인정됨

□ 인프라 활용 및 지원

ㅇ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장비 등)는 스마트그린산단 또는 연계지역(산단) 내에 위치해야 한다

※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접근성·타당성·공공성 등이 인정되면 산단 외 구축을 승인할 수 있다.

ㅇ 기구축된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 및 관련 AX사업의 성과물(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성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제36조(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에 따라 성과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유지운영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ㅇ 구축된 성과물의 자립화 방안과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구조 및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단 환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비즈니스모델의 수익구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기반으로 수익금

활용 방안 및 자립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 5G 특화망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대해 의결 후 집행한다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소한의 유지·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산단 입주기업 지원 및 AX 확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사업으로 확보되는 데이터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동소유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 요청 시,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산단 간 인프라의 기술적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보증보험 가입**

ㅇ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매칭금으로 산정)

ㅇ 수행기관 중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 불가

□ **사업비**

ㅇ 컨소시엄 내부 거래 및 관계회사(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 집행 불가

ㅇ 본 사업은 연구수당 계상 불가

ㅇ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ㅇ 정부출연금은 사무실 임차, 임대, 인테리어, 부지매입,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ㅇ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 **개인정보보호**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정보 참고

ㅇ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마련하여 과제 수행

□ **기 타**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제안요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 별도의 이익을 요구할 경우 문제과제로 판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2026년 산업단지 엣지 AIDC 실증 시범사업 시행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 AX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엣지 AIDC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지자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엣지 AIDC 실증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입주기업의 제조AX 촉진을 위한 산단 단위 공용 핵심인프라인 엣지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 **사업예산** : 140억원(정부 출연금 기준)

□ **매칭의무** : 정부출연금 대비 매칭비율 30%이상 부담 필수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엣지형 AIDC는 금년 내 구축 완료)

□ **성과활용** :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성과물 운영

□ **대상산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선 정 수** : 1개 컨소시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목표)
인프라 구축	AI 모듈형 데이터센터 구축	1년 내 가동
	고발열 대응을 위한 에너지 최적화	PUE1.25↓
	AIDC 안전성 및 보안체계 확립	무중단·무사고
AI 연산 인프라	국산 NPU 의무도입 및 AI 연산 자원 최적화	NPU 80% 이상 구성
	수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 아키텍처 설계	유연한 증설
	산단 AX 지원사업(AX실증산단, 5G 등)과 연계방안	사업 연계 시너지
제조특화 서비스	시중 클라우드 대비 최대 50% 할인된 요금 제공	비용 부담 완화
	제조 자원 최우선 할당	제조 AI 50%↑
	IaaS(코로케이션), PaaS, SaaS 서비스 제공	맞춤형 AX 지원
거버넌스	산단 엣지 AIDC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공공성 확보
	AIDC 운영 자립화	재무적 자립

2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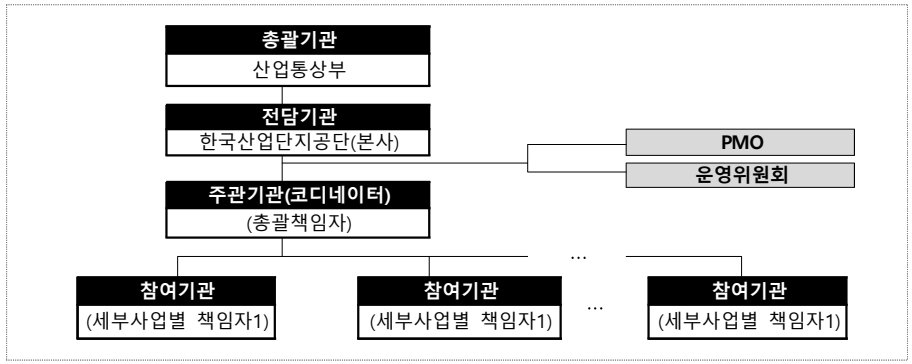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 정책 수립 및 사업 총괄관리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사업 세부 기획, 공모 지침 마련 및 평가·선정 위원회 운영 총괄 ▪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국비 교부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사업 진도 점검, 최종 검수,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총괄
주관기관 (지자체 등)	▪ 컨소시엄 운영 총괄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이행 책임 ▪ AIDC 구축용 산단 내 부지 제공 및 전력 등 관련 인허가 행정 ▪ 지방비 확보 및 민간 투자 자금 조달 총괄 ▪ 인프라 자립화 운영 및 입주기업 대상 인프라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여기관 (IT/클라우드/DC 사업자 등)	▪ 인프라 설계·시공 ▪ AI 연산 서버 등 H/W, S/W 도입 ▪ 클라우드 환경 조성 ▪ 인프라 유지보수
PMO (사업관리조직)	▪ AIDC 구축 전 과정 기술적 품질 관리 및 공정 관리 ▪ 프로젝트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적 이슈 해결 지원 ▪ 컨소시엄의 산출물 검토 및 최종 감리 지원
산단 엣지 AIDC 운영위원회	▪ (구성) 전담기관, 컨소시엄, 산단 입주기업 대표사, 전문가 등 ▪ (역할) 서비스 요금 승인, 수익금 관리 감독, 성과지표 점검, 운영사 평가 등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 자격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주관기관)** 아래 요건 중 5, 6, 7, 8, 9 중 하나를 만족하며, 산업단지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해야 함

* 본점 또는 분점 소재지 기준

○ **(참여기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며, 클라우드 전문기업, AI 반도체 전문기업, 모듈형 데이터센터 구축기업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 **(책임체계)** 시스템 통합 장애 발생 시 참여기관 간 연대 책임 및 최종 기술 복구 주체 명시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 참여 제한

○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컨소시엄 구성 및 중복 참여 제한 유의사항**

○ **(중복참여 불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은 1개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하며,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무효 처리

○ **(공급기업 중복 제안 허용)** 사업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내 공급자가 제한적일 경우, 컨소시엄의 공식 구성원이 아닌 장비 납품, SW공급, 기술 용역 형태의 외부 공급기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장비 및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음

* 국산 NPU, MDC 특수설비 등

□ **스마트K팩토리 플랫폼 연계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서비스 창구)** 본 AIDC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모든 AI 연산자원 및 AI 서비스는 산단공의 공식 플랫폼인 스마트K팩토리를 통하여 신청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연동되어야 함

○ **(표준가이드 준수)** AIDC 인프라에 등재되는 모든 AI 모델 서비스는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스마트K팩토리 AI모델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4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요청사항

□ **모듈형 AIDC 인프라 구축 및 부지확보**

○ **(신속구축)** 1년 내 신속 가동을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패널 형태의 모듈형 데이터센터 구축

○ **(입지확보)** 산업단지 내 전력인입(수전 확약), 상하수도, 통신회선 등 인프라 가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확보된 부지 필수

○ **(보안·관제)** 보안펜스,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및 24시간 인프라 통합 관제실 운영 등 물리적 보안 및 네트워크·데이터 보안체계 구축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준용

□ **고효율 전력 및 냉각 시스템 최적화**

○ **(PUE 최적화)** 고집적 연산 환경 및 해당 산단의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고효율 냉각 방식과 전력 배분 설계를 통해 저전력 환경 구현

○ **(에너지 생존성 확보)**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무중단 운영을 위한 UPS(무정전 전원 장치) 및 비상 발전 설비 구축, 화제 예방 및 자동 소화 시스템 포함

□ **연산 자원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 **(K-NPU)** 전체 AI 가속기 자원의 80% 이상을 국산 NPU로 구성

○ **(네트워크)** AIDC 내·외부 네트워크 아키텍처 분리 및 고도화 설계

* 대규모 AI 연산 병목 차단 네트워크 구성, 및 외부망 초저지연 연동

5 핵심 과업 및 의무 운영 조건

□ **산단 입주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AI 컴퓨팅 서비스)** 산단 입주기업의 AX 지원을 위한 고성능 AI IaaS, PaaS, SaaS 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

○ **(부가서비스)** 입주기업의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 현장 수요에 맞춘 다양한 부가 서비스 모델 제공

□ **제조특화 자원 운영 및 공공성 유지**

○ **(자원할당)** 전체 AI 연산 자원의 50% 이상을 제조 AI 서비스 및 산단 입주기업에 우선 배분하여 제조 AX 인프라로서 정체성 유지

○ **(요금정책)** 상용 클라우드 단가 대비 50% 이하 요금 제공 및 이행확약

□ **지역 AI 생태계 조성 파급력**

○ **(지역특화)** 지역 특화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조 AX 파급효과

○ **(연계지원)** 정부지원 AX 사업과 연계방안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제시

□ **국산 AI 반도체 실증 인프라 제공**

○ **(테스트베드)** 입주기업 및 AI 솔루션 기업들이 국산 NPU 위에서 자체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고 최적화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공공 거버넌스 및 관리 감독 수용**

○ **(운영위원회)** 협약체결 후 '산단 엣지 AIDC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 인프라 가동률, 자원 할당률, 요금제 등

○ **(데이터관리)**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성과지표 보고의무 이행

□ **재정 자립화 및 영구 운영전략**

○ **(수익모델)** 의무 운영 기간(5년) 동안 정부 지원금 외 자체 수익을 통한 독립채산제 운영 및 재무 건전성 입증

○ **(영구 자립화)**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산단의 영구적인 공공 인프라로 지속 운영 될 수 있도록 장비 교체 등 자립 운영 계획 수립

□ **스마트K팩토리 연계 아키텍처 구현**

○ **(통합 연동망 구현)** AIDC 인프라와 스마트K팩토리간 연계를 위한 API 연동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 **(AI 표준화)** 제공되는 AI 모델 및 부가 서비스 개발 시 스마트K팩토리 AI모델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

□ **사업비 구성 원칙**

○ **(총 사업비)**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매칭금(지방비 및 민간 부담금) 합계로 구성

○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정부 출연금에는 전담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반영해 사업비 산출 내역서 작성

* (기획평가관리비) 정부출연금 140억원의 4.97%(6,958십만원)

○ **사업품질관리(PMO) 예산 편성 및 운영**

- 본 사업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담기관은 수행기관과 독립된 총괄 PMO(기술감리 포함)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함
- 해당 비용은 전담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와 본 사업의 국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전담기관이 집행함

* 전담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2.5억) + 사업비(2.5억)

- 주관기관은 본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 시 PMO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매칭비율 및 출자방식**

○ **(매칭비율)**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대비 30% 이상 매칭필수

○ **(현금출자)** 총 매칭금 중 최소 5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유동성을 확보

* 현물 계상은 세부관리지침 제16조(사업비 산정기준) 및 별표 4(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를 따름

○ **(사업부지)** 수행기관에서 사업부지를 제공(현물)하며, 부지가액은 사업기간 및 의무 운영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부지가액 산정 시 AIDC 전용 사용 면적을 명시한 도면과 공인 감정평가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중앙 조달 의무 및 예외)** 단일 품목 기준 1억원 이상의 장비 구매 시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획을 필수로 진행해야 함

- 단, 기술적 특수성, 사업기간 내 적기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할 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집행 제한 항목)** 사업부지 매입비는 정부 출연금으로 산정 및 집행할 수 없으며, 전액 매칭금에서 처리해야 함

○ **(내부 거래 금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간의 상호 거래 및 자사 제품의 사업비 집행 불가

7 추진 일정

구분	내용	비고
① 수행기관 모집 ('26.4.29)	▪ 신청서류 작성 제출(온라인)	수행기관 → 전담기관
② 공모 설명회 ('26.5.6)	▪ 공모 사업 설명회	전담기관
③ 수행기관 선정평가 ('26.7월 예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전문가 등)	전담기관
④ 사업심의·조정 ('26.7월 예정)	▪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예산 등)	전담기관, 우선협상대상자
⑤ 선정통보, 협약체결 ('26.7월 예정)	▪ 수행기관 선정 통보, 협약 체결	전담기관, 수행기관
⑥ 사업 착수 ('26.8월)	▪ 착수보고회	수행기관
⑦ AIDC 구축 ('26.12월)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수행기관
⑧ 성과활용 (종료 후 5년)	▪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8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 및 선정절차**

가. 1단계 : 사전 적격심사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지방비·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선정평가 배제

나. 2단계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AI, 클라우드, DC 인프라,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

○ **(평가방법)** 제안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표에 따라 채점

* 접수된 컨소시엄 수가 많을 경우 사전 서면 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 대상을 제한

○ **(점수산출)**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

* 최고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함

○ **(선정기준)** 최종 산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은 컨소시엄을 적격으로 판정하며, 적격 컨소시엄 중 최고 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재원 확보 우수성, ② 공공성 확보 및 운영 자립화, ③ 수수료 절감 혜택 ④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역량 순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함

다. 3단계 : 현장실사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2인 이상 참여하는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실사 진행

○ **(평가내용)** 제안서에 명시된 기반시설 완비 여부 및 대형 장비 반입을 위한 토목·접근성 요건 점검

○ **(평가결과)** 실사 결과 제안내용과 현장이 명백히 다르거나 1년 내 구축이 불가능할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차순위자와 현장 실사 및 협상 재진행

라. 4단계 : 최종 협약 체결

○ 현장 실사를 통과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기술 및 예산 협상을 완료한 후, 이행보증 보험증권 수령 후 사업협약 체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량 평가 (20점)	재원 확보 우수성	• **매칭금 확보 비율 (국비 대비 총 매칭금 비중)** - 국비 대비 매칭비율 50% 이상 제시 : 8점 - 국비 대비 매칭비율 40% 이상 제시 : 7점 - 국비 대비 매칭비율 30% 이상 ~ 40% 미만 제시 : 6점	8
		• **현금 출자 비율(총 매층굼 중 현금 비중)** - 총 매칭금 중 현금 출자 비율 70% 이상 : 7점 - 총 매칭금 중 현금 출자 비율 60% 이상 ~ 70% 미만 : 6점 - 총 매칭금 중 현금 출자 비율 50% 이상 ~ 60% 미만 : 5점	7
	수수료 절감 혜택	• **이용료 할인율 (상용 클라우드 단가 대비)** - 60% 이상 할인 단가 제공 : 5점 - 50% 이상 ~ 60% 미만 할인 단가 제공 : 3점	5
정성 평가 (80점)	사업 타당성 및 기반 조성	• **사업 목표 부합성** - 산단 내 제조 AI 수요 분석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정부의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 및 국가균형성장계획 부합도	10
		• **부지 확보 타당성** - 부지 입지, 전력(수전계획) 등 기반 시설 인입 계획 우수성	10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역량	• **신속 구축 및 전력 최적화** - 1년 내 가동을 위한 MDC 공정 계획 및 적기 조달 방안 - 전력 효율 지수(PUE) 1.25 이하 달성 및 전력 생존성 강화 방안	10
		• **연산자원 및 네트워크 초적화** - 국산 NPU 기반 하드웨어 보안 및 시스템 확장성(Scale-out) - 대규모 AI 연산 병목 차단 네트워크 구성 및 외부망 초저지연 연동	5
		• **보안 체계 구성** - AIDC의 물리적 방호 및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의 우수성 - 정보 보안 통제 역량(ISMS 준수 등)	5
	공공성 확보 및 운영 자립화	• **자원 할당** - 제조 AI 및 입주기업 최우선 할당 정책 우수성	5
		• **스마트K팩토리 연계성 및 산단 AI 생태계 기여도** - 스마트K팩토리와의 연동 아키텍처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5
		• **KPI 설정** - 제조 AI SaaS 실사용 건수, 도입 기업 수 등 목표치 타당성	5
		• **지역 AI 생태계 조성 파급력** - 지역 특화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조 AX 파급효과 - AX 지원사업과 연계 시너지 창출 효과	10
		• **영구 자립화** - 5년 의무운영 수지 분석 및 이후 공공 인프라 자립화 방안	5
	추진 역량 및 관리 체계	• **컨소시엄 전문성** - 클라우드, NPU 등 참여기관 기술력 및 인력 적정성	3
		• **책임 체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최종 복구 연대 책임 주체 명확성	3
		• **거버넌스 구성·운영** - '산단 엣지 AIDC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4
합 계		**총점 100점 만점**	**100**
가 점 (5점)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 **인구 소멸 대응 등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 준공 20년 이상 경과 노후산단 : 1점 - 비수도권지역 2점	**3**
	AX 준비도	• **AX 실증산단 해당 산단**	**2**

9 추진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등

□ **관련규정**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ㅇ 기타 산단 엣지형 AIDC의 입지, 규모, 구축 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10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6월 29일(월) 12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ㅇ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하고, 한글 등 원본파일은 USB 2개에 저장하여 발표평가** 당일 제출
(5153park@kicox.or.kr)

* PDF 파일은 제출 서류명(번호 포함)으로 제출 필요

**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제출(자유양식)하며, 제출일자는 전담기관 별도 안내 예정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 40분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이후 제출 자료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제출서류 목록 >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1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직인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서식2	1부	주관+참여	
3. 참여인력 전체현황	서식3	1부	주관+참여	
4.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각1부	주관+참여	참여제한 여부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1부	주관	수행기관 대표자 직인
6.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각1부	주관+참여	참여자 자필 서명
7.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7	1부	주관+참여	
8. 지자체 현금 현물 출연 확약서	서식8	1부	주관	
9. 유사사업 수행실적표	서식9	1부	주관+참여	
10. 사업계획서	서식10	1부	주관기관	
11. 정량·정성평가 항목 조견표	서식11	1부	주관기관	
12. 법인정관	-	각1부	주관+참여	
13.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4.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 제출
1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6.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자체양식	각1부	주관기관	
17.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8.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주소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070-8895-7715
		070-8895-7068

11 유의사항

□ 정부 정책 변화, 예산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예고 없이 사업규모, 일정, 과업 내용 등 변경 또는 취소 가능

* 제안사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 본 공모와 관련해 공고문,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 우선

□ 제안서 작성, 현장실사, 발표 준비 등 공모 참여 소요 비용 일체 제안사 부담

□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마감 기한 이후 임의 수정·보완·교체 불가

* 전담기관의 공식 요청 시 예외

□ 평가위원 명단, 세부 채점 내역, 평가 의견 등 심사 세부 사항 비공개하며 이의제기 불가

□ 서류 위변조 허위사실 적발 시 즉각 평가 제외, 선정 이후 적발 시 우선 협상 자격 박탈 및 협약 해지

□ 평가위원 사전 사후 개별 접촉, 로비 등 불공정 행위 발견 시 즉각 실격 처리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약 체결 전 정부출연금 10% 이상의 이행보증금권 의무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인프라 구축 및 가동 미완료 시 지연일수 비례 지체 상금 부과

□ 핵심 의무 위반 및 무단 사업 포기 시 '산단 엣지 AIDC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협약 중도 해제

ㅇ 기 제출 이행보증금 즉시 국고 환수 귀속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2026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산업단지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산업단지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10년간 데이터를 의무 제공해야 함

□ **대상단지** : 2025년 선정된 3개 신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충남아산부곡, 충북충주, 경남마산

□ **선 정 수** : 산업단지별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ㅇ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1개의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지원규모** : 산업단지별 국비 총 20억원(3년간)

* 2027년 이후 정부예산 배정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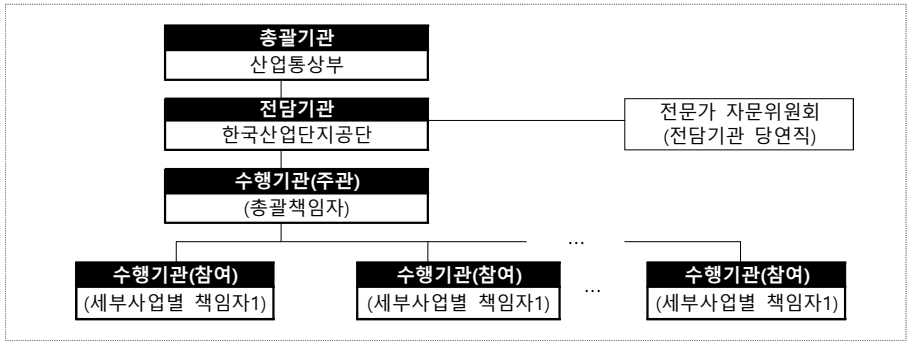

ㅇ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총괄 ▪ 수행기관 선정평가・연차평가・최종평가 ▪ 총사업비 지급・관리・정산, 산단별 성과분석・검증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 수행기관과의 협약 및 사업비 지급・관리・정산 ▪ FEMS 설치기업 선정평가・협약, 설치 현장 확인 ▪ 지역운영센터(LOC) 설치 확인・검수, 사업수행 점검, 성과관리 등
수행기관*	▪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제공 ▪ FEMS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2038년) ▪ 플랫폼 기반 에너지 절감률, 데이터 연계・제공 등 성과목표 달성 ▪ 플랫폼 기반 신규 비즈니스(에너지 신사업) 발굴・추진 ▪ FEMS 보안시스템 구축 ▪ FEMS 데이터 의무 제공 및 전담기관 통합 DB 연계(2038년)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FEMS 설치기업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 FEMS 설치 협조 ▪ FEMS와 전담기관 통합 DB 연계 협조 ▪ 공장 에너지 데이터 의무 제공(~2038년)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회원사 참여 ▪ 산업단지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7명 내외)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심의 및 계약의 적정성 검토 ▪ 분야별 성과 검증 및 자문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FEMS 설치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주관기관'이며 그 밖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봄

□ 사업내용

❶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진단 컨설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입주기업 대상 FEMS 설치기업을 선발

▪ FEMS 설치기업 대상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ISO 50001 표준 참조)

* PDCA 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 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 FEMS 설치기업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제어・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FEMS 데이터와 전담기관 통합 DB 연계 방안 수립

▪ 구축된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마련,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 성과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및 지속적 효율화 추진

▪ 전담기관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FEMS 구축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작성

❷ 계측 인프라 구축

▪ FEMS 설치기업의 생산 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인자(온도, 압력 등)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 인프라 설치

▪ 계측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설치 및 계측 데이터의 정합성* 검토

* 관제점(계측포인트) 선정 후 사업장 전체를 에너지 경계로 보고 한전 파워플래너 또는 고지서 내 유효전력량(kWh)과 구축된 플랫폼의 실측 유효전력량이 허용오차(5%) 이하 정합성 필요

❸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 대상 설비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제어 알고리즘 설계

▪ 에너지절감 제어 기술을 적용한 엑츄에이터 장치 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시스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PLC, HMI, DCS 등의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의 통신 모듈(드라이버) 설치

❹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

▪ 공장 에너지 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FEMS 설치기업은 웹·모바일로 FEMS에 접속하여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사 에너지 관리 활동 전개

▪ 타 시스템(MES, ERP, 설비제어 등)과 FEMS와의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 FEMS 설치기업의 설비·공정에 실시간 인터페이스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AI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제어 프로토콜
- 설비·공정 관리에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성과지표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영향인자 계측기 설치 시 반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제어 대상설비의 최적값 입력 및 감시·관리 기능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데이터 연계,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에너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전담기관 통합 DB에 연계·제공

❺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SEC, Smart Energy Cluster) 구성 및 운영

- FEMS 설치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문기업·기관·대학 등이 참여한 오프라인 에너지 협의체,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를 산업단지별로 구성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성과 공유·확산 및 에너지 신사업의 사업화 촉진*
  * FEMS와 MES와의 연계, 산단형 마이크로그리드, 수요관리(DR, 전력재판매, VPP) 등
-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연결·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세미나, 설명회, 포럼, 공동연구, 정책제언 등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 FEMS 설치기업별 ISO 50001 표준 절차서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 및 핵심 절차인 에너지 저감평가(EnPI)를 위한 기업별 영향인자 선정 컨설팅

❻ 해킹사고 방지 및 정전대비 데이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별 연도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추진계획

구분		본사업	별도 사업	
		FEMS, SEC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FEMS+ 사업장	산업단지 MRV
2026년 (1차년도)	추진방향	초기 집중보급	구축 및 운영	연계
	구축 수	6개 (6개사 × 1개 산단)	14개(세부주관(수요기업) 기준)	
	추진내용	▪ FEMS 설치기업 발굴 ▪ 클라우드형 FEMS 구축 ▪ SEC 구성·운영	▪ 탄소규제 5대 업종 중심 구축 인프라 선정 ▪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사업장 구축 ▪ 제품 단위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및 절감 방안 제시 ▪ PCF/LCA 기반 산정보고서 생성 ▪ 기업별(공정별) 측정 LCIA DB 생성 ▪ FEMS+-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 검증기관 연계 및 탄소배출 검증값 도출	
2027년 (2차년도)	추진방향	보급 확산		
	구축 수	6개 (6개사 × 1개 산단)		
	추진내용	▪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 (계속) ▪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 SEC 공동사업 발굴		
2028년 (3차년도)	추진방향	보급 확산		
	구축 수	8개 (8개사 × 1개 산단)		
	추진내용	▪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 (계속) ▪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 사후관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SEC 공동사업 추진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통합 DB 연계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데이터 연계·저장·분석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자격 요건 : 주관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이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일 것

유사사업

1.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사업
2.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성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등

□ **참여 제한**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는 최대 5개이고, 이 중 주관기관으로는 최대 3개로 제한함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 사업비 구성

-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ㅇ 정부출연금은 1차년도 6억원, 2차년도 6억원, 3차년도 8억원 이내로 지원 예정(1개 산단 기준)
- ㅇ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부담금 10%(현금, 현물) 이상을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기준

- ㅇ 수행기관은 계측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에 정부출연금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함
- ㅇ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산정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항목

- ㅇ 정부출연금 지원항목은 1)FEMS 설치기업 대상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2)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 3)FEMS 구축·운영, 4)SEC 구성·운영으로 구분
- ㅇ 1)FEMS 설치기업 대상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2)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은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ㅇ 3)FEMS 구축·운영 비용,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은 최대 9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ㅇ 4)SEC 구성·운영 비용은 최대 8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1) (FEMS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FEMS 계측장치,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인프라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FEMS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용(~2038년)
-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FEMS 데이터와 전담기관 통합 DB 간 연계 비용
- PLC, HMI, DCS 등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의 통신모듈(드라이버) 설치
-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 진단, 에너지 관리 방안 컨설팅 비용
- 기존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업그레이드 비용(전문가 자문위원회 인정 시)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2)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설비·공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SCADA, HMI, DCS,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및 양방향 자동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비용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3) (FEMS 구축·운영) 9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FEMS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FEMS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2038년)
-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전담기관 통합 DB 시스템 간 연계 비용
- FEMS 설치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관리 활동 비용
  - * 소극적 관리 활동: 에너지 모니터링, 예측, 효율분석, 제어, 피크관리, 원단위 분석, 노후, 안전 예지보전, 전력 품질관리 등
  - * 적극적 관리 활동: 수요반응(DR) 연계, 전력 거래, 사업장 ESS-EMS 연계 등 FEMS 설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 투입된 장비나 전산시스템 등의 인증 비용
- SCADA, HMI, DCS,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및 양방향 자동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비용
- 에너지 효율화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4) (SEC 구축·운영) 8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운영비
  * 회의비,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비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 연도별 · 지원항목별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

연번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
		'26년	'27년	'28년	계	
❶	FEMS 기업 진단 컨설팅	5.4억원	5.4억원	7.2억원	18억원	100%
	계측 · 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 운영					
	FEMS 클라우드 서비스 등					
❷	SEC 구축 · 운영					80%
❸	FEMS 플랫폼 구축 · 운영**	0.6억원	0.6억원	0.8억원	2억원	90%
계		6억원	6억원	8억원	20억원	-

* ❸은 지원 한도 금액이며, ❸에서 남은 금액은 ❶에 추가하여 편성하여야 함

** ❸ "FEMS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旣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행기관은 旣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비용 절감 및 기능 고도화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통합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데이터 연계 · 저장 · 분석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정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을 편성하도록 함

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① 수행기관 모집 (4.29 ~ 6.8)	▪ 신청서류 작성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신청기관 → 전담기관
② 수행기관 선정평가 **(6월 예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전문가 등)	전담기관
③ 사업심의 · 조정 (7월 중순)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예산 등)	전담기관, 우선협상대상자
④ 선정통보, 협약체결 (7월 말)	▪ 수행기관 선정 통보, 협약 체결	전담기관, 수행기관
⑤ 사업 착수 (7월 말)	▪ FEMS 구축 착수, 착수보고회	수행기관
⑥ 사업 추진 (7월 ~ 10월)	▪ FEMS 인프라 구축	수행기관
⑦ FEMS 구축 완료, 시운전(10월)	▪ FEMS 구축 완료, 서비스 테스트	수행기관
⑧ 현장 점검 (9월 ~ 10월 예정)	▪ FEMS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수행기관
⑨ 베이스라인 및 보고기간 설정 (8월)	▪ 설치기업별 베이스라인 및 보고기간 설정 (4 또는 6개월)	수행기관
⑩ 제어시스템 설치 (9월)	▪ 에너지 절감 개선 아이템 설치	수행기관
⑪ 최종 보고 (11월)	▪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및 사업완료	수행기관
⑫ 성과보고회 (12월)	▪ 최종(연차) 평가위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회계검증기관
⑬ 성과활용 (종료 후 5년)	▪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5 세부 추진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사전 적합성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		협약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사업 선정**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신청 컨소시엄이 많을 경우 발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서면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적합성 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선정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선정평가

○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율 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10)	목적 부합성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산단별 특수조건을 반영한 사업제안 여부			2.5
	사업수행 역량		• 추진 체계,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전문성 및 경영 상태 -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역할 및 책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7.5
사업 경쟁력 (40)	FEMS 구축 및 운영		• FEMS 구축·운영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 차별성 - FEMS 구축·운영 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적절성 - 플랫폼의 차별성, 사업 경쟁력, 비용 투입 대비 경제성 - MES/ERP 등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제품단위 절감성과 도출 - FEMS 설치기업 모집의 적정성			15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절성, 우수성, 경쟁력 - 양방향 제어가능한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방안			15
	에너지 진단 및 디지털트윈		• 에너지 진단 분석 및 디지털트윈 기술의 구체성 - 설비·공정별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요소 분석 - 설비·공정별 디지털트윈 및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 및 제안			5
	SEC 구성 및 운영		•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 구성·운영의 적정성 -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공동특화 에너지 신사업 발굴, FEMS 설치기업 대표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견 제출 등			5
사업효과 (30)	정량	에너지 절감률	산업단지별 성과목표	10% 이상	5점	15
				11% 이상	10점	
				12% 이상	15점	
	정성	경제성	• FEMS 사업을 통한 설치기업 및 산업단지별 에너지비용 절감 -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의 도전성 및 적정성			5
		데이터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계율, 신뢰성 등 품질관리 우수성			5
		확산 가능성	• FEMS 결과물의 향후 업종별, 공정별, 산업단지별 확산 가능성 - 他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확산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도			5
사업관리 (15)	사후관리 적정성		• 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사후 유지보수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의 적정성 -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 매칭 등 사업비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소통방안의 우수성		• 설치기업과 FEMS 운영을 위한 소통방안의 우수성 - 지속성, 편의성, 반응속도(피드백) 계획의 우수성			5
ESG (5)	상생협력		• 사업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5
총점						100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협약체결

○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되며, 2차년도 이후에는 연차평가 결과 및 사업예산 규모 확정 후 연차 협약을 통해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정부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별 협약 체결

○ 협약 시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이 가능

□ 정부출연금 지급

○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FEMS 설치기업 모집

○ 신청기관은 1차년도 FEMS 설치기업 후보군(6개사)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1차년도의 경우 초기 집중보급 단계로 원활한 일정을 위해 사업신청 시 수행기관의 선정평가를 조건으로 한 FEMS 설치기업의 참여확약서(조건부)를 미리 확보하여 신청

- FEMS 설치기업 확정은 전담기관의 적격심사(서류)를 거쳐 확정

○ FEMS 설치기업 후보군 발굴* 시 기업규모(중소·중견), 공장 소유형태(자가), 해당 산업단지 주력산업 부합성, 에너지 사용량(50~2,000toe)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FEMS 설치기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당해 사업 수요조사를 필수 실시하고, FEMS 설치기업 참여확약서(조건부)에 <u>대표자의 직인 날인</u> 필수

** 예외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득하여야 함

○ FEMS 설치기업별 40 ~ 100백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고, 기업당 평균 70백만원 수준*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FEMS 설치완료보고서**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 구축, FEMS 구축·운영 관련

** 전담기관의 별도 가이드라인 양식에 따름

○ FEMS 설치기업 확정 후,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 FEMS 설치기업 3자 간 계약체결

< FEMS 설치기업 선정 절차 >

컨소시엄 선정평가 (전담기관, 5월) → 설치기업 확정 (전담기관, 5월 중순) →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 (컨소시엄, 5월 하순)

□ 사업수행

○ 수행기관은 旣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계측·제어시스템 구축, FEMS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진행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1차	FEMS 설치 현황 등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10월 이내
2차	계측, 제어시스템, FEMS 구축 완료 보고	11월 이내
3차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11월

○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진도보고 결과 및 현장실사 결과,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 수행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에 계측 인프라·제어시스템 설치 및 FEMS 플랫폼으로의 연계를 완료(시운전 포함)

○ 동 사업을 통해 발행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전담기관의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른 정부출연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ㅇ 유형자산은 취득일 이후 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반영된 사업 성과보고서를 최종(연차)평가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전담기관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성과 달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가 필요하며, 향후 전담기관 별도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ㅇ 전담기관은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최종(연차)보고서 확인 등 당초 목적대로 정부출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평가를 통해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차 사업 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주관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ㅇ 전담기관은 필요 시 제출된 보고서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며, 수행기관은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 3'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따름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6월 8일(월) 15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기타**

- ㅇ 재공고의 경우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재공고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ㅇ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ㅇ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이메일도 제출 (smartenergy@kicox.or.kr)
- ㅇ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양식1	1부	주관기관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2	1부	주관기관	
3.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각1부	주관+참여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4	1부	주관기관	
5. FEMS 설치기업 참여 확약서	양식5	각1부	설치기업	
6.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5	각1부	주관+참여	
7.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6	1부	주관+참여	
8. 유사사업 수행실적표	양식7	1부	주관기관	
9. 사업계획서	양식8	10부	주관기관	1부 원본+9부 스캔본 출력 후 제출
10. 법인정관	-	각1부	주관+참여	원본대조필 날인
11.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2.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 제출
13.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4.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자체양식	각1부	주관기관	
15.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22~'24년)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6.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17.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주관기관	

□ 접수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접수처	주소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070-8895-7212 070-8895-7323

ㅇ 문의처

단지명	문의처	주소	연락처
충남 아산부곡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충청혁신기획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070-8895-7611
충북 충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오송프라자 604호	070-8895-7641
경남 마산자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산단진흥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070-8895-7894

8 유의사항

□ 상호운용성 확보

ㅇ 他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통신 프로토콜 규격은 아래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솔루션, 설비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합성 평가 수검 의무화

< 통신 프로토콜 규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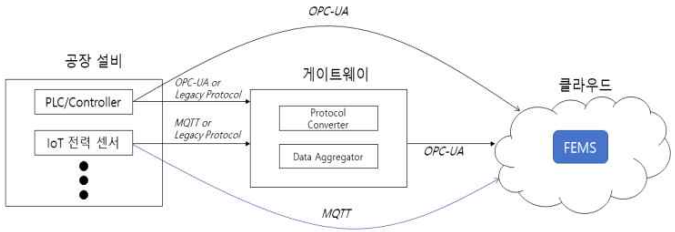

OPC-UA : IEC62541 스마트공장 표준 통신기술, 설비 제어기, PLC등에서 정보 취득/제어가 가능한 기술
MQTT :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ISO/IEC PRF 20922
Legacy Protocol : 기존 산업용 통신 (시리얼 통신 포함)

ㅇ 표준성 기반의 데이터 활용 ·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활용

* 외부 시스템 및 다른 운영체계에서 연동·활용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

ㅇ 향후 시스템 연계, 표준화 등 상호운용성 이슈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수행기관 협의회 구성 시 참여 필수

□ 플랫폼 구축 전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은 플랫폼 구축 전 전담기관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플랫폼 세부기능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문서화된 산출물을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 제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초과하여 계상 가능함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수행기관은 FEMS 설치기업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FEMS 설치기업과 수행기관의 **에너지데이터 의무 제공기간은 FEMS 정상 가동시점부터 10년임**(2029~2038년)

ㅇ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요청 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한국에너지공단), 스마트제조R&D(한국산업단지공단), AI융합에너지효율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타 정부사업 수행기관에 데이터를 지정한 방식으로 **의무 제공**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중앙센터, 혁신데이터센터, 산단 통합운영센터 등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의무 수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수요관리, 계측기, 설비 등 데이터 연동을 위한 항목별 형식을 준수하여 표준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참고1)
- 데이터 연계방식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Open API에서 사용하여 범용성이 높은 REST API 방식의 XML/JSON 데이터 교환으로 적용하며, API 설계서 및 연계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既정부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외

ㅇ 기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입주기업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수행지역 발전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에 따른 신규채용, 일자리 연계, 수행지역 발전방안 관련 성과목표를 반드시 제시

* 관련 실적은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연도별 성과평가에도 반영

□ 협약 위반 시 조치

ㅇ 선정된 수행기관이 협약 위반 시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방법

ㅇ 수행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를(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포함)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기관 이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ㅇ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성과지표 설정

ㅇ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로 총 10개 이내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아래의 필수지표는 반드시 기관별 목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수행기관별 특화지표는 자유롭게 제시하되, 주관기관은 모든 지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음

< 필수 성과지표 >

구분	성과지표명	내용	목표
필수	FEMS 설치기업 수(개사)	구축 20개사(1차 6개사/2차 6개사/3차 8개사)	20개사
필수	에너지 절감률(%)	∑베이스라인 측정에 따른 영향인자가 반영된 FEMS 설치기업별 구축 전후 절감률 ÷ FEMS 설치 기업 수	최소 10%
필수	에너지 데이터 연계율(%)	기업별 전체 계측기 중 FEMS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신되는 비율	95%
필수	에너지 데이터 수집률(%)	기업별 FEMS 정상가동 시점부터 일별 전체 계측 횟수 중 수집된 데이터의 비율	95%
필수	에너지 데이터 신뢰성(%)	수집된 데이터 중 오류 검출 비율	95%
필수	플랫폼 이용률(%)	FEMS 정상가동 이후 최종(연차)보고 시점까지 설치기업별 플랫폼 접속 로그기록 비율	기관별 제시
필수	SEC 교육 및 컨설팅 건수(건)	플랫폼 활용법 교육 및 에너지 절감 컨설팅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ㅇ 전담기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FEMS 설치기업별 에너지 절감 정량목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심의대상)"에 의거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제안서 및 협약용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

ㅇ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사업은 세목별 사업비 정산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지출 증빙 등 매입기준 세부자료 필수 제출(FEMS 설치기업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不可)

ㅇ 지역운영센터(LOC)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내 설치가 원칙이며, 그 외 장소에 설치 시 전담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모든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비는 수행기관 간 거래, 자사제품 현금사업비 산정, 관계사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거래가 제한됨

ㅇ 수행기관과 FEMS 설치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구축·설비의 설치 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인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계획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함
- 무형적 성과물은 그 개발기관에 귀속됨

□ 산단별 특수조건

ㅇ 신청기관은 산업단지별 다음 사항을 준수 혹은 고려하여 사업을 제안

<table>
<tr><th>산단명</th><th>특수조건</th></tr>
<tr><td>충남
아산부곡</td><td>■ 주력산업
- 철강,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 등
<table>
<tr><th>지역</th><th>구분</th><th>산업단지명</th></tr>
<tr><td rowspan="5">충남
아산부곡</td><td>①거점산단</td><td>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td></tr>
<tr><td rowspan="4">②연계지역(산단)</td><td>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td></tr>
<tr><td>당진1철강 일반산업단지</td></tr>
<tr><td>석문국가산업단지</td></tr>
<tr><td>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td></tr>
</table></td></tr>
<tr><td>충북
충주</td><td>■ 주력산업
- 금속기계, 전기전자, 비금속, 석유화학 등
<table>
<tr><th>지역</th><th>구분</th><th>산업단지명</th></tr>
<tr><td rowspan="5">충북충주</td><td>①거점산단</td><td>충주 제1산업단지</td></tr>
<tr><td rowspan="4">②연계지역(산단)</td><td>충주 제3·4·5산업단지</td></tr>
<tr><td>용탄 농공단지</td></tr>
<tr><td>중앙탑 농공단지</td></tr>
<tr><td>충주 제2공업단지</td></tr>
</table></td></tr>
<tr><td>경남
마산</td><td>■ 주력산업
- 일반기계,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등
<table>
<tr><th>지역</th><th>구분</th><th>산업단지명</th></tr>
<tr><td rowspan="4">경남마산</td><td>①거점산단</td><td>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td></tr>
<tr><td rowspan="3">②연계지역(산단)</td><td>창원국가산업단지</td></tr>
<tr><td>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단지</td></tr>
<tr><td>봉암공업단지</td></tr>
</table></td></tr>
</table>

※ 거점산단(연계지역) 조정 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참고1 FEMS 데이터 연동 항목 구성

1. 수혜기업 기본정보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별 사업자 정보를 의미한다. 수혜기업의 스마트그린산단 입주 사업장 정보와 상태, 사업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수혜기업 기본정보는 기업의 입주 및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에너지 원단위 효율화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항목명	세부내용	형식
실적연도	- 수혜기업 기본정보가 갱신된 집계 년도	YYYY
수혜기업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상에 등록된 회사명에 따름	
산업단지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상에 등록된 단지명에 따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따라 지정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 소재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산단 명칭	
수혜기업 주소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사업장 소재 주소	도로명 주소
업종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대표업종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표준산업분류의 명칭에 따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명
업종코드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대표업종 코드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에 등록된 표준산업분류의 코드번호에 따름	표준산업분류 5자리
사업자 등록번호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사업장 등록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상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름	
매출액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월별 매출액	원(KRW)

2. 수혜기업 에너지 현황 정보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에 구축된 FEMS에서 수집되는 에너지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원별 에너지 사용량, 검침정보, 공정 및 설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수혜기업 에너지 현황 정보는 기업의 수요관리를 위한 분석과 에너지 원단위 효율화 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항목명	세부내용	형식
실적기간	- 수혜기업 에너지 현황 정보가 갱신된 15분 단위 집계 시점	YYYYMMDD:HHMM
에너지원 구분	- 에너지원 분류의 명칭 - 석유류, 석탄류,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기타연료 등의 분류에 따름	
계측원(原) 구분	- 에너지 데이터가 수집된 계측원 분류의 명칭 - FEMS 계측기, 검침정보(한전 파워플래너 등)의 분류에 따름	
공정구분	- 에너지 사용 공정 분류의 명칭 - 기업 검침정보 또는 간접가열용, 직접가열용, 동력용, 전기화학용, 기타 등의 분류에 따름	
설비구분	- 에너지 사용 설비 분류의 명칭 - 기업 검침정보 또는 보일러용, 오븐용, 동력용, 열사용 및 열이송, 기타 등의 분류에 따름	
계측기명	- 단위 계측원의 명칭 - 기업 검침정보 또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이 FEMS 구축 시 등록한 명칭	
에너지 사용량	- 집계 시점별 구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참고) 공정·설비 구분 및 집계

구분		세부내용
공정	간접가열용	- 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최종 생산 공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형태가 증기 또는 온수로써 이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설비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직접가열용	- 원재료, 반제품, 공기 등에 열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연료로써, 용해로, 가열로 등 각종 공업용 요·로 및 소성, 가열솥 등의 가열설비, 가스용 용접기 및 가스 절단기 등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동력용	- 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에너지를 열이나 증기의 형태로 변환시키지 않고 직접 동력을 얻는 설비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전기화학용	- 전지·전기분해·계면 전기현상·전기열화학 기체 내 방전 외에 고체·액체·기체의 구조, 물체 내의 도전 현상·이온화 상태 등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기타	- 공정 설비 이외 난방 등의 용도로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설비	보일러용	- 생산 공정용 일반 보일러 또는 자가발전용 보일러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 공정용 외 보일러 (주방전용, 기타 복리 후생시설 (난방) 전용 등) 에서 사용한 연료 사용량은 보일러용에서는 제외하고 기타에 포함하여 집계함
	오븐용	- 공업용 오븐 및 각종 가열기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 철강업의 용광로, 전로, 용해로 및 요업의 킬른 등
	동력용	- 자가발전용 디젤기관, 가스터빈 등 내연기관에서 사용한 연료 및 기타 동력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열사용 및 열이송	- 각종 가열기에서 사용한 연료 및 공정상 열사용 및 열이송에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 건조설비, 히트펌프, 냉동기, 열교환기, 반응기, 염색기, 유체관로설비 등
	기타	- 공정 설비 이외 난방 등의 용도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말함

3. 수혜기업 구축물 상태 정보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에 구축된 계측기, 효율화 장치, 설비 등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물의 상태 현황 정보를 의미한다. 구축물별 가동여부, 통신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수혜기업 구축물 상태 정보는 기업에 설치 또는 임대되어 활용 중인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물의 자산 건전성과 가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항목명	세부내용	형식
실적시간	- 수혜기업 구축물 상태 정보가 갱신된 15분 단위 집계 시점	YYYYMMDD:HHMM
구축물 구분	- 구축물 분류의 명칭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혜기업 클라이언트(FEMS 등), 계측기, 효율화 장치, 설비 등의 분류에 따름	
구축물 건전성	- 구축물 건전성 분류의 명칭 - 정상, 비정상, 통신이상 등의 분류에 따름	
구축물 상태	- 구축물 상태 분류의 명칭 - 가동, 정지 등의 분류에 따름	

2026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사업장 구축 및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를 통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중소·중견·대기업에 **공장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시스템(FEMS+) 구축** 지원(**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을 통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데이터를 의무 제공해야 함

□ **대상단지** : 2025년까지 선정된 24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경기반월시화, 인천남동, 경북구미, 경남창원,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울산미포, 부산명지녹산, 전북군산, 대전, 충남천안, 충북청주, 경북포항, 전남대불, 인천주안부평, 부산신평장림, 전남광양, 전북전주, 경남사천, 강원후평, 경남마산, 충남아산부곡, 충북충주

□ **선 정 수** : 14개 수행기관*(세부주관, 컨소시엄)**

* 세부주관 정부출연금 신청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총괄-세부주관-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세부주관 기준 평가·지원)

ㅇ FEMS+ 구축사업 기준에 적합하며 사업에 대한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수요-공급 컨소시엄을 구성한 수행기관(컨소시엄)*을 세부주관(수요기업) 단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수행기관(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컨소시엄 중 1개 참여기관(공급기업)은 세부주관(수요기업)을 최대 3개사 매칭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지원규모** : 국비 총 84억원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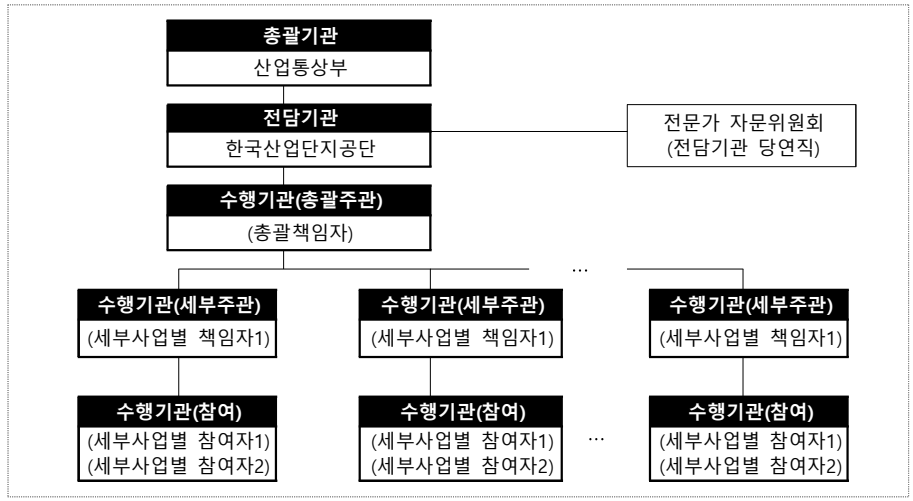

ㅇ (수행기관 구성) FEMS+ 구축사업 기준에 적합하며 사업에 대한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 (총괄주관기관) 컨소시엄 수요발굴, 공급매칭, 사업관리, 사업비 배분 및 집행, 제품 단위 LCA 컨설팅 등 사업수행 관리·지원
- (세부주관기관) 제품(공정) 단위 전과정평가(LCA) 기반 탄소배출 산정 및 저감을 위해 제조현장 내 FEMS+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 (참여기관) 수요기업 제조현장에 FEMS+ 설치를 위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시스템통합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 (참여기관) 제품 단위 컨설팅, LCA 평가 수행, 수요기업 LCI DB 구축,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방안 컨설팅, 교육 및 홍보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 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총괄 ▪ 수행기관 선정평가・최종평가 ▪ 총사업비 지급・관리・정산, 산단별 성과분석・검증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 수행기관과의 협약 및 사업비 지급・관리・정산 ▪ FEMS⁺ 설치기업 현장 확인 ▪ 수행기관(컨소시엄) 운영 확인, 사업수행 점검, 성과관리 등
수행기관 (총괄주관)	▪ 수요기업・공급기업 발굴 및 사업관리 ▪ FEMS⁺ 도입비용 및 검증지원 ▪ FEMS⁺-산업단지 MRV 연계 협조 ▪ 사업 진행결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실적 보고
수행기관 (세부주관-수요기업)	▪ FEMS⁺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FEMS⁺ 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FEMS⁺ 구축 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 FEMS⁺ 및 산업단지 MRV 플랫폼 보안시스템 구축 ▪ FEMS⁺ 및 산업단지 MRV 플랫폼 데이터 의무 제공(~종료후 5년) ▪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 의무 제공(~종료후 5년)
수행기관 (참여-공급기업)	▪ FEMS⁺ 구축을 위한 시스템 기술지원, 대상설비 설치, 유지보수, 시스템 설치 후 수요기업 지원
수행기관 (참여-지원기관)	▪ LCA 컨설팅·평가 수행, 수요기업 LCI DB 구축,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방안 컨설팅, 교육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7명 내외)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 심의 및 계약의 적정성 검토 ▪ 분야별 성과 검증 및 자문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 가능(세부주관 필수)하며, 세부주관-참여(공급기업)만으로 구성할 경우 총괄주관 역할을 참여(공급기업)가 수행함

< 수행기관(컨소시엄) 구성(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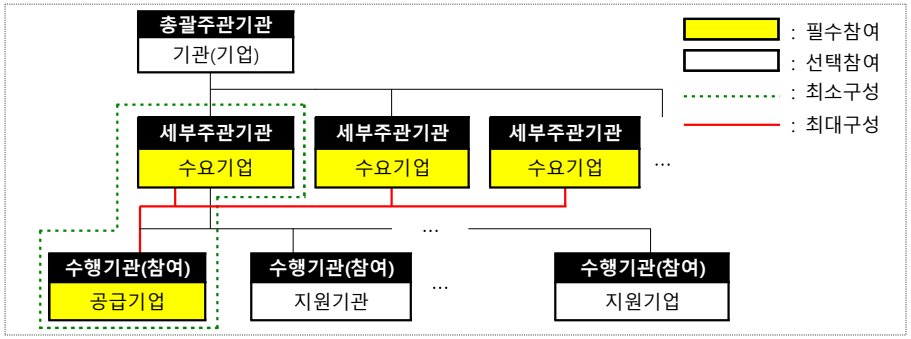

□ 사업내용

❶ 공장에너지·온실가스측정시스템(FEMS⁺, Factory Energy·GHGs Measur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

- 탄소규제 본격화 5대 업종(자동차, 배터리,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규제(CBAM, DPP 등) 대응을 위한 FEMS⁺ 사업장 구축
- 제품별 탄소배출 측정을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 / 장비 내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열, 습도 등 환경 변수별 데이터를 센서, 측정기기 등을 통하여 실시간 취득 관리하고, 취득된 데이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및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FEMS⁺와 연계한 탄소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FEMS⁺ 사업장 내 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장비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도출(LCA를 통한 장비별 LCI 데이터 도출)
- FEMS⁺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활동을 위한 에너지 베이스라인 설정과 MES 연계 등을 통한 원 단위 산출 및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석 시각화 도구와 AI분석 도구 제공(EnPI 등)
-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호환 전송 기술에 기반한 실증사업장 내 관련 장비들(FEMS⁺, 실측 Hub, Edge등)의 데이터 교환 구현
- PCF/LCA 기반 글로벌 규제 대응 보고서 기반 구축
- FEMS⁺ 사업장의 에너지/탄소배출 절감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기능 제공
- FEMS⁺ 사업장의 제품 단위의 설비를 선별하여 최적의 탄소배출, 에너지밸런스 및 절감을 도출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❷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 FEMS⁺ 사업장의 실시간 에너지·탄소배출 데이터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 표준데이터모델(AAS 등), 데이터호환전송기술(EDC 등), 인증표준 S/W(클라우드 또는 On-Premise) 등 플랫폼과의 상호운용
- 소버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연계 글로벌 탄소규제(CBAM, DPP 등) 대응 제품 탄소발자국(PCF) SaaS 전과정영향평가(LCA) SaaS 어플리케이션
- LCA 프로세스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및 Inventory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구현
- 신뢰성 있는 데이터 도출을 위한 플랫폼의 표준화된 검증방법 및 절차 적용
- FEMS⁺ 사업장의 탄소배출정보는 검증기관과 연계하여 검증값 도출
- 검증된 탄소배출량 D/B화를 통한 국내형 LCI 데이터 구축
-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측정, 분석, 검증, 정보 전달 솔루션,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갖춘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마켓플레이스) 활용

❸ 해킹사고 방지 및 정전대비 데이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구분		본 사업		별도사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FEMS, SEC
		FEMS⁺ 사업장	산업단지 MRV	
2026년	추진방향	구축 및 운영	연계	초기 집중보급
	구축 수	14개(세부주관(수요기업) 기준)		6개 (6개사 × 1개 산단)
	추진내용	▪ 탄소규제 5대 업종 중심 구축 인프라 선정 ▪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사업장 구축 ▪ 제품 단위 에너지·온실가스 측정 및 절감 방안 제시 ▪ PCF/LCA 기반 산정보고서 생성 ▪ 기업별(공정별) 측정 LCIA DB 생성 ▪ FEMS⁺-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 검증기관 연계 및 탄소배출 검증값 도출		▪ FEMS 설치기업 발굴 ▪ 클라우드형 FEMS 구축 ▪ SEC 구성・운영
				보급 확산(2027년)
				6개 (6개사 × 1개 산단)
				▪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계속) ▪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 SEC 공동사업 발굴
				보급 확산(2028년)
				8개 (8개사 × 1개 산단)
				▪ FEMS 설치기업 발굴 및 FEMS 구축(계속) ▪ 旣구축된 FEMS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 ▪ 사후관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SEC 공동사업 추진

* 수행기관은 산업단지 MRV 연계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협의하여 FEMS⁺ 데이터 연계·저장·분석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일부(정부출연금 15% 이내)를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자격 요건 : 총괄주관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세부주관·참여)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 총괄주관기관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이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일 것(참여기관 실적 포함할 수 있음)

유사사업

1.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사업
2.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등

※ 수행기관 중 세부주관(수요기업)은 대상단지 내 기업으로 탄소규제 대응(탄소배출 산정보고서)이 필요한 기업에 한함

□ 참여 제한

ㅇ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세부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는 최대 5개이고, 이 중 주관기관으로는 최대 3개로 제한함(당해연도 사업 중복 신청 불가)

ㅇ 참여기관(공급기업)이 FEMS+를 설치할 수 있는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수는 최대 3개사로 제한함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 지원규모

ㅇ 총괄주관기관 신청과제당 n개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국비로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당 사업비 지원

* 총괄주관기관의 사업운영관리비 포함

□ 사업비 구성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지방비, 민간부담금(현금), 기타매칭금으로 구성

ㅇ 정부출연금은 총 6억원 이내로 지원 예정(세부주관기관 기준)

ㅇ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부담금 10%(현금) 이상을 세부주관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50% 이상

< 수행기관(컨소시엄) 총사업비 구성(예)* >

구분	지원분야	금액			비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세부주관(중소A)	- FEMS+ 인프라 구축 -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 에너지온실가스 효율화 시스템 구축·운영 - 클라우드 서비스 등	3억원	0.3억원(국비10%)	3.3억원	기타매칭금 별도
세부주관(중소B)		3억원	0.3억원(국비10%)	3.3억원	
세부주관(중견)		6억원	0.6억원(국비10%)	6.6억원	
세부주관(대기업)		6억원	3억원(국비50%)	9억원	
총괄주관기관	- 사업운영·관리비 등*	(1.8)억원	-	(1.8)억원	정부출연금 내 편성
계		18억원	4.2억원	22.2억원	

*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는 정부출연금 10%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비율* >

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	비고
중소·중견 기업	6억원	0.6억원(국비10%)	자율매칭(지방비, 상생협력금** 등)	
대기업	6억원	3억원(국비50%)		

* 민간부담금은 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드시 편성(현금)하여야 하나, 기타 매칭금은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자율매칭 가능

** 상생협력금은 대·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대·중견기업의 사업참여시 사업비 구성에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비 기준

○ 수행기관은 FEMS⁺ 구축 및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에 정부출연금의 85% 이상*을 사용해야 함

* FEMS⁺ 사업장 구축·운영 70% 이상,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15% 이하

○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산정해야 함

○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는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산정해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항목

○ 정부출연금 지원항목은 1)FEMS⁺ 사업장 구축·운영, 2)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3)사업운영·관리비로 구분

○ 1))FEMS⁺ 사업장 구축·운영 87.5%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2)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3)사업운영·관리비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1) (FEMS⁺ 인프라 구축·운영) 87.5%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FEMS⁺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FEMS⁺ 계측장치,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인프라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FEMS⁺ 실증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용(종료 후 5년)
- FEMS⁺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종료 후 5년)
- PLC, HMI, DCS 등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의 통신모듈(드라이버) 설치
- SCADA,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온실가스 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및 양방향 자동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비용
- FEMS⁺ 설치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활동 비용
  - * 소극적 관리 활동: 에너지·온실가스 모니터링, 예측, 효율분석, 제어, 피크관리, 원단위 분석, 노후, 안전 예지보전, 전력 품질관리 등
  - * 적극적 관리 활동: 수요반응(DR) 연계, 전력 거래, 배출권거래제(K-ETS) 등 FEMS⁺ 설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에너지·온실가스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 설비·공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고탄소 설비의 업그레이드 비용(시스템에 한함)
- 에너지·온실가스 효율화·배출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성과지표(EnPI) 검증 기술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2)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산업단지 MRV 표준화·운영·유지보수 등 플랫폼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
  - * IT 인프라 설치 공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 MRV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
- 외부 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FEMS⁺·TOC⁺ 시스템 간 연계 비용
-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활동 비용
- 투입된 장비나 전산시스템 등의 인증 비용
- 데이터표준, 데이터호환전송기술, 인증표준 S/W 및 SCADA, HMI, DCS, MES, ERP 등의 연계를 통한 탄소배출정보 시스템 비용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3) (사업운영·관리비) 100%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

- 세부주관기관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총합의 10% 이내로 편성*
  - *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 등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음
- FEMS⁺ 설치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진단 및 관리 방안 컨설팅 비용
- 수행기관(컨소시엄) 운영비
  - * 회의비,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비 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항목

< 지원항목별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

항목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
❶	FEMS⁺ 인프라 구축·운영	4.2억원	최대 87.5%***
❷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0.9억원	100%
❸	사업운영·관리비	0.6억원	100%
❹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0.3억원	100%
계		6억원	-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을 지원항목 ❶에 편성하고, FEMS⁺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MRV 데이터 연계·저장·분석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을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함

** FEMS⁺ 설치기업(수요기업) 여건(제품, 공정 등)에 따라 지원분야(기획평가관리비 제외)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0.6억원, 중소·중견기업 기준)은 FEMS⁺ 인프라 구축·운영에 매칭하여야 하며, 기업규모, 기타매칭금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

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① 수행기관 모집 (4.29 ~ 6.8)	▪ 신청서류 작성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신청기관 → 전담기관
② 수행기관 선정평가 **(6월 예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전문가 등)	전담기관
③ 사업심의 · 조정 (7월 중순)	▪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예산 등)	전담기관, 우선협상대상자
④ 선정통보, 협약체결 (7월 말)	▪ 수행기관 선정 통보, 협약 체결	전담기관, 수행기관
⑤ 사업 착수 (7월 말)	▪ FEMS+ 구축, 산업단지 MRV 연계, 착수 보고회	수행기관
⑥ 구축 완료, 시운전 (11월)	▪ FEMS+ 구축 완료 및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 시운전	수행기관
⑦ 시스템 구축(11월)	▪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완료, 서비스 테스트	수행기관
⑧ 현장 점검 (12월)	▪ FEMS+ 구축 현장 점검 및 산업단지 MRV 연계 확인	수행기관
⑨ 최종 보고 (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완료	수행기관
⑩ 성과보고회 (12월)	▪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회계검증기관
⑪ 성과활용 (종료 후 5년)	▪ 사업종료 후 FEMS+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 최종보고는 총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5 세부 추진절차

□ 선정절차

○ 총괄주관기관 컨소시엄 단위로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사전 적합성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세부주관기관 단위)** 후,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	협약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신청 컨소시엄이 많을 경우 발표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서면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적합성 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제한 여부, 민간부담금 매칭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선정평가 배제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선정평가

○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세부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위임 가능)

○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참여율 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15)	목적 부합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2.5
	정책 부합성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해당 산단 특성을 반영한 사업제안 -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대응 등 정부 지역균형성장 정책 부합성 - 지역 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격차 완화 기여도			10
	사업수행 역량		・추진 체계,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전문성 및 경영 상태 -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역할 및 책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2.5
사업 경쟁력 (30)	FEMS+ 구축 및 운영		・FEMS+ 구축・운영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 차별성 - FEMS+ 구축・운영 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적절성 - FEMS+ 인프라의 차별성, 사업 경쟁력, 비용 투입 대비 경제성 - 탄소규제 본격화 5대 업종, CBAM 6대 업종 등 제품단위 배출량 도출 - FEMS+ 사업장의 적정성			15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운영 방안의 우수성, 구체성 -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운영 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적절성 - 데이터 표준, 데이터호환전송기술, 인증표준 S/W 도입 방안 - 탄소배출정보 플랫폼 호환성, 사업 경쟁력, 비용 투입 대비 경제성 -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안전성 검증, 탄소배출 검증값 도출			15
사업효과 (30)	정량	탄소배출 절감률	세부주관별 성과목표	8% 이상	5점	15
				10% 이상	10점	
				12% 이상	15점	
	정성	정합성	・FEMS+ 사업장별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설치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합성			5
		경제성	・FEMS+ 사업장 최적의 탄소배출, 에너지 절감 도출 - 사업장의 에너지/탄소배출 절감의 도전성 및 적정성			2.5
		데이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계율, 신뢰성 등 품질관리 우수성			2.5
		확산 가능성	・사업 결과물의 향후 업종별, 공정별, 산업단지별 확산 가능성 - 공급망 내 관계사 및 他스마트그린산단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도			5
사업관리 (15)	사후관리 적정성		・성과활용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사후 유지보수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적정성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의 적정성 -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소통방안의 우수성		・FEMS+과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운영을 위한 소통방안의 우수성 - 지속성, 편의성, 반응속도(피드백) 계획의 우수성			5
ESG (10)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환원 계획의 타당성 ・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10
합계						100
균형발전 (가점)	국가균형발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 -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5

ㅇ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협약체결

ㅇ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되며, 협약 시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 지원금 조정이 가능

□ 정부출연금 지급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FEMS+ 설치기업(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ㅇ FEMS+ 사업장은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 공장 소유형태(자가), 탄소규제 본격화 5대업종(자동차, 배터리,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 및 CBAM 6대 업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부합성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수입처 또는 공급망 내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 요구 증빙 등

ㅇ FEMS+ 사업장은 6억원(국비 최대) 수준*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FEMS+ 설치 확인 보고서**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제품단위 에너지·온실가스 산정시스템 구축, FEMS+ 구축·운영 관련

** 전담기관의 별도 가이드라인 양식에 따름

□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은 既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FEMS+ 구축,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진행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1차	FEMS+ 구축, 산업단지 MRV 연계 현황 등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10월 이내
2차	FEMS+ 구축, 산업단지 MRV 연계 완료 보고	12월 이내
3차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연차) 보고서 제출	종료 후 45일 이내

ㅇ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진도보고 결과 및 현장실사 결과,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ㅇ 수행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 1개월 전에 FEMS+ 설치 및 산업단지 MRV 플랫폼 연계를 완료(시운전 포함)

ㅇ 동 사업을 통해 발행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전담기관의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른 정부출연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ㅇ 유형자산은 취득일 이후 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반영된 사업 성과보고서를 최종평가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전담기관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성과 달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가 필요하며, 향후 전담기관 별도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ㅇ 전담기관은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최종보고서 확인 등 당초 목적대로 정부출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평가를 통해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 사업 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총괄주관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FEMS+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성과활용기간(사업종료연도 후 5년)을 고려하여 플랫폼 클라우드 기간 설정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내용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ㅇ 전담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수행기관은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연도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 3'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에 따르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따름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6월 8일(월) 15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기타**

- ㅇ 재공고의 경우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재공고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ㅇ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ㅇ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이메일도 제출 (smartenergy@kicox.or.kr)
- ㅇ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사업신청서	양식1	1부	주관기관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2	1부	주관기관	
3.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각1부	주관+참여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4	1부	주관기관	
5.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5	각1부	주관+참여	
6.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출연 확약서	양식6	1부	주관	
7. 기타매칭금 출연 확약서	양식7,8	1부	주관	해당시
5. 유사사업 수행실적표	양식9	1부	주관기관	
9. 사업계획서	양식10	10부	주관기관	1부 원본+9부 스캔본 출력 후 제출
10. 법인정관	-	각1부	주관+참여	원본대조필 날인
11.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2.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비영리기관은 고유번호증 제출
13.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4. 사업신청서 제출공문	자체양식	각1부	주관기관	
15.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22~'24년)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6.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17.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주관기관	수입처 또는 공급망 내 기업 등

□ **접수처 및 문의처**

- ㅇ 접수처

접수처	주소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070-8895-7054

8 유의사항

□ 상호운용성 확보

ㅇ 본 산업단지 MRV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와 향후 전개될 소버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legacy protocol들 이외에는 본 사업에서 정의하는 국제 표준에 준거한 데이터 모델(AAS등) 및 통신 프로토콜 규격(OPC-UA, MQTT, EDC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솔루션, 설비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합성 평가 수검 의무화

ㅇ 표준성 기반의 데이터 활용 ·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활용

* 외부 시스템 및 다른 운영체계에서 연동·활용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

ㅇ 향후 시스템 연계, 표준화 등 상호운용성 이슈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수행기관 협의회 구성 시 참여 필수

□ 플랫폼 연계 전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은 플랫폼 연계 전 전담기관에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플랫폼 세부기능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관에 문서화된 산출물을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 제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초과하여 계상 가능함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수행기관(수요기업)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FEMS+ 사업장과 수행기관의 **에너지데이터 의무 제공 기간은 FEMS+ 사업장 정상 가동시점부터 5년임**(2027~2031년)

ㅇ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요청 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한국에너지공단), 스마트제조R&D(한국산업단지공단), AI융합에너지효율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타 정부사업 수행기관에 데이터를 지정한 방식으로 **의무 제공**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중앙센터, 혁신데이터센터, 산단 통합관제센터 등 전담기관이 별도 지정한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의무 수행해야 함

- 데이터 연계방식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Open API에서 사용하여 범용성이 높은 REST API 방식의 XML/JSON 데이터 교환으로 적용하며, API 설계서 및 연계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旣정부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외

ㅇ 기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공장에너지·온실가스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입주기업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수행지역 발전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에 따른 신규채용, 일자리 연계, 수행지역 발전방안 관련 성과목표를 반드시 제시

* 관련 실적은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성과평가에도 반영

□ 협약 위반 시 조치

ㅇ 선정된 수행기관이 협약 위반 시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방법

ㅇ 수행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를(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포함)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기관 이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 전담기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FEMS+ 설치기업별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량목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4조(심의대상)"에 의거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제안서 및 협약용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

○ FEMS+ 사업장 인프라의 경우, 세목별 사업비 정산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지출 증빙 등 매입기준 세부자료 필수 제출

○ 수행기관과 FEMS+ 사업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구축·설비의 설치 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FEMS+) 유형적 성과물은 세부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계획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하고, 무형적 성과물은 그 개발기관에 귀속됨

○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최종평가 이전에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나,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 처분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사업의 내용상 수행기간 중 성과물 처분, 매매 등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전, 매매,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 대상산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현황(거점산단, 연계산단)

'19~'20년

지역	대상산단	
	거점	연계
경기	반월시화(국)	성남, 발안
경남	창원(국)	김해골든루트, 사천1·2, 칠서
인천	남동(국)	한국수출(부평주안)(국), 송도지식
경북	구미(국)	김천1, 성주1,2, 왜관
광주	광주첨단(국)	빛그린(국), 하남, 평동

'20년~'21년

지역	대상산단	
	거점	연계
전남	여수(국)	광양(국), 여수, 율촌1
대구	성서1~5	서대구, 대구제3
울산	울산·미포(국)	테크노, 매곡
부산	명지·녹산(국)	사상, 신평장림
전북	군산1(국) 군산2(국)	새만금(국), 익산2, 전주과학

'22년

지역	대상산단	
	거점	연계
대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청주	오송(국) 오창, 옥산
충남	천안2 천안3 천안4	인주, 아산 테크노, 강소연구특구
전남	대불(국)	삼호, 화원, 삽진
경북	포항(국)	외동, 영천첨단, 포항철강

'23년

지역	대상산단	
	거점	연계
인천	주안부평(국)	인천기계, 인천지방, 뷰티플파크
전남	광양(국)	율촌제1, 순천, 해룡
부산	신평장림(일)	-

'24년

지역	대상산단	
	거점	연계
강원	후평	거두, 퇴계1,2, 동춘천, 남춘천, 수동, 창촌, 전력IT, 도시첨단, 남면, 당림
경남	사천1 사천2	종포, 항공사천(국), 사남, 정촌, 진주상평, 진주뿌리, 항공진주(국),
전북	전주1 전주2	전주친환경(1단계), 전주친환경(3-1단계), 전주도시첨단

'25년

지역	대상산단	
	거점	연계
충남	아산부곡(국)	아산고대(국), 석문(국), 당진1(일)
충북	충주제1(일)	충주제3~5(일), 용탄(농), 중앙탑(농) 충주제2산단 충주기업도시
경남	마산자유(국)	-

※ 거점산단(연계지역) 조정 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화 증대 및 입주기업 에너지 경쟁력 강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정의 준용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대상단지** : 9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대전, 부산신평장림, 인천주안부평, 전북전주, 경남사천, 강원후평, 충북충주제1, 충남아산부곡, 경남마산

** 산업단지 인접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한하여 허용

□ **수행기관 선정** : 대상단지별 1개 수행기관 선정

ㅇ 수행기관을 평가하여 1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는 단일 SPC를 설립하여 SPC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SPC설립이 불가한 경우 관련사유, 회계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 : 총사업비는 **출연금**과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ㅇ 출연금 : 산업단지별 4년간 200억 원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출연금	5,000	6,000	6,000	3,000	20,000

* 상기 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획평가관리비는 출연금 5% 이내에서 산정

ㅇ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 : 120억 원 이상(일부 매칭은 협상가능)

- 지방비는 3,000백만원 이상 매칭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양식8]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서*[양식9] 제출 必

* 사업내용 및 사업종료 후 성과물의 소유권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협의결과 포함

- 민간부담금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물 40%이하로 계상

* 민간부담금 60억 원 출자 시 (현금 36억 원, 현물 24억 원)

ㅇ 토지, 건물, 건축, 인테리어 등 조성비는 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 등은 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매칭금 또는 기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

- SPC 자본금은 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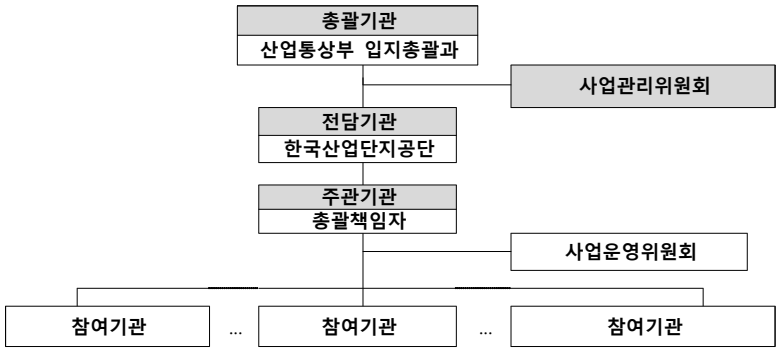

* 사업관리위원회 : 해당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의 재투자 결정 및 현장 맞춤형 사업 발굴, 사업관리 등

** 사업운영위원회 : 협약체결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자체 장비심의위원회 역할을 통합하여 운영

□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필수	①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 산업단지 에너지 현황 조사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ex) 산단 主 에너지원 및 에너지원별 입주기업 사용 현황조사 -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 분석 및 본 사업 및 연계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 에너지 자립률 제시 ▸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 산단 내 분산에너지원 구축을 통한 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인프라 구축(태양광, SMR, 폐열발전, 소형풍력 등) * 태양광을 주력으로 할 경우 10MW 이상 구축하여야 함 - 선택신기술 재생에너지 인프라(BIPV, 고효율 패널을 이용한 BAPV 등) 구축을 통한 산단 특화 에너지 인프라 실증 * 신기술 재생에너지원 인프라 설비 및 설치 기준은 전담기관과 협의必
	②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산업단지 분산에너지원 발전량 관리 및 공급-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 분산에너지 발전량 등 공급 수요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성 관리(VPP, DR 등) -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플랫폼 구축 - 선택디지털 트윈, AI 활용 등을 이용한 플랫폼 고도화
	③ 입주기업 지원	▸ 탄소저감을 위한 입주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산단 입주기업 탄소저감 컨설팅 20개사 이상 -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20개사 이상
	④ 수익 재투자	▸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수익 환원(햇빛소득, 탄소바우처), 탄소저감 관련 시설 설치 - 산단 내 기업 및 근로자 수익 환원(햇빛소득) - 선택분산에너지원 인프라 추가 구축 - 선택산단 근로자를 위한 탄소바우처, 탄소저감 관련 시설* 설치 ex)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탄소흡수원 확대(나무 2,000그루 심기) 등

사업유형		사업내용
선택 ※ 1개 이상 ※	⑤ 계통 안정형 인프라 구축	▸ 계통 안정형 및 전력자립형 모델 구축 - ESS, AVR, AMI*, PMU** 등 지능형 전력망 기반을 통한 계통 보완 설비 패키지 구축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검침 및 통신가능한 지능형 계량 인프라 ** Phasor Measurement Unit : 측정 시각이 동기화된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⑥ 지역맞춤형 인프라 구축	▸ 지역 시·도 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 사업 ▸ 산업단지별 특성 및 국가·지역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 사업 ex) [광양시] 친환경 수소 특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 * 태양광(에자자) → 청정수소 생산설비(광양시) → 수소 생산 → 수소환원
	⑦ 마이크로그리드 또는 DC 전력망 구축	▸ 폐열, 부생가스 등 활용한 자원순환 Biz모델 발굴 및 마이크로그리드 시범 모델 구현 ▸ DC 기반 분산에너지원의 연계 확대, 한전 계통망 부하 영향 방지 등을 위한 배전망 단위 분산에너지 전용 DC 전력망(LVDC) 구축 ex) 발전-저장(ESS)-소비(EVC) 전 과정 DC망 연계를 통한 분산에너지 전용 전력망 구축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방법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 + 참여 N개)*으로 신청 가능

* 선정된 컨소시엄은 단일 SPC를 설립하고 SPC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되, SPC설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사유, 회계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①, ② 요건을 모두, 참여기관은 ①, ③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5. 광역시·도지사, 시·군·구청장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3.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사업 관리 감독역할 포함)이 매출액 또는 사업비 기준 30억 원 이상인 기관

-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양식10]와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인정

【유사사업】 유사사업은 ①수요자원 거래시장, ②ESS 통합서비스, ③에너지 자립섬 등 마이크로그리드, ④전기자동차, ⑤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태양광 대여, ⑦제로에너지빌딩, ⑧친환경 에너지타운, ⑨수소사업(생산,연료전지, ⑩배전/MG 계통 운영/해석, ⑪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등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 ⑫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

③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본 사업에서 수행 예정인 업무의 **직접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①항의 1~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함)

- 직접수행 여부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양식10]와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사업 관리 감독역할은 불인정하며, 하도급 계약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하도급 승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제한

ㅇ 본 사업은 주관기관으로 3개, 참여기관으로 5개를 초과하여 수행 및 신청할 수 없음

* 사업 추진 중인 산단(13개): 경기반월시화, 인천남동, 대구성서, 광주첨단, 전남여수,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남대불, 경북포항, 전남광양

- 금회 공고 신청은 주관기관으로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합산하여 총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개인사업자인 경우, 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4. 29.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8.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말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6. 7월 초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 수행기관	’26. 7월 중
↓		
(계속)	(계속)	(계속)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제출서류 등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구분	단계별 주요내용
①사전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 제한 여부, 매칭금 등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②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평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매칭금 비율, 현금 비율로 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및 사업목표 타당성 (10)	ㅇ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제안 여부	2.5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우수성 및 수행역량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및 수행기관의 기술역량 등	2.5
	ㅇ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관리 및 달성전략 등 - 지표 정의 및 산출방식의 타당성 및 객관적 증빙 계획 등 -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의 적정성 등	5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 분산에너지 인프라 조성 계획의 우수성, 차별성, 구체성 등 -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발전용량 및 발전원 종류 등) - 산단 내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구축 방안 등 - 지속적인 분산에너지원 확대 방안 등	30
	ㅇ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의 우수성, 차별성, 구체성 등 -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플랫폼 구축 방안 - 에너지 발전소 발전량 등 공급·수요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성 관리(VPP, DR, 디지털트윈 포함) 방안 - 기타 분산에너지원 활성화 관리 플랫폼 제안사항	15
	ㅇ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의 우수성, 차별성, 구체성 등 - 산단 내 기업 및 근로자 수익 환원 방안 - 산단 햇빛소득 도입방안 - 산단 입주기업 탄소저감 이행을 위한 컨설팅 방안 - 분산에너지원 인프라 추가 구축 방안 - 산단 내 문화·복지·편의시설·탄소흡수원 등 재투자 방안	15
사후 관리방안 (20)	ㅇ성과활용기간의 수익 관리 및 산단 내 수익 환원 방안 - 구축 성과물의 관리·운영 방안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 수익의 산단 환원 방안(구체적인 금액 제시) - 산단 햇빛소득 확산 방안 - 성과활용기간 중 재투자 방안 - 성과활용기간 이후 지속적인 산단 환원 및 인프라 확대 방안	20
기타사항 (10)	ㅇ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총사업비 구성 비율(출연금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 비중) - 사업비 배분 및 용도의 적합성 등	5
	ㅇ 사업 기대효과 및 보안·안전조치 적정성 - 본 사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5
계		**100**
가점사항 (10)	ㅇ 산단 소재 관내 기업 참여 -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유지 기간(3년)	5
	ㅇ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비 절감 시 가점 부여 - 기보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원 구축 비용 극대화 및 플랫폼 개발비용 절감 시 가점 부여(기보유 플랫폼 증빙 및 본 사업 활용방안 제시)	5

5 추진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6월 8일(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신청 공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종이서류 원본 및 사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USB 1개에 저장(스캔본)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제출

※ 종이서류(원본, 사본 10부) 및 USB 1식 직접 제출, USB 저장파일 이메일 제출

☐ **접수처**

ㅇ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39,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9층

ㅇ e-mail 접수 : **energyself@kicox.or.kr**

☐ **제출서류** : 붙임 참조(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효율화팀 ☎ 070-8895-7372, 7398~9

7 유의사항

☐ **분산에너지원 설계·구축 방안**

ㅇ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 분산에너지 인프라 시설 부지확보 확약서 제출 必[양식11]

ㅇ 수소를 활용한 발전설비 제안 시 발전에 사용되는 수소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수소 활용 발전설비 부지확보 必, 민원대응, 개질방법, 탄소포집 유무 등
- 수소입찰시장에서 낙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선정 시 대응 방안 제시 必

ㅇ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사업 추진 예정인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必

☐ **사업종료 후 유지운영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ㅇ 구축된 성과물의 자립화 방안과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구조 및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단 환원 방안 제시 必

- 비즈니스모델의 수익구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기반으로 수익금 활용 방안 및 자립화 방안 제출 必
-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의 현금·현물 투자에 대한 수익 분배 또는 재투자 방안 수립

ㅇ 본 사업수행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사업, VPP 사업 등 연계사업 확대 방안 제시

☐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

ㅇ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제시

□ 수용가 지원 방안

ㅇ 수용가는 분산에너지원 활용과 탄소저감 이행을 원하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ㅇ 수행기관은 수용가 후보군의 참여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 선정 후 모집공고를 통해 수용가를 모집하고, 전담기관(지역본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ㅇ 수용가가 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수용가와 중복될 경우, 타 사업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연계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본 사업계획과 연계 가능

- 본 사업비 외 민간투자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 투자확약서(LOC) 또는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투자사업계획서 제출 必

ㅇ 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본 사업과 연계방안 및 비용절감 방안 도출

- 특히, 기존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통합 플랫폼 등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의 절감 및 기존 성과물 활용 방안 제출 必

ㅇ 탄소 저감 이행을 위해 산업단지 내·외 기설치된 분산에너지 인프라 시설 등과 연계하여 성과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단일 SPC에 귀속하되, 기타 소유권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SPC 설립

ㅇ 수행기관은 단일 SPC를 설립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성과물 전체를 구축, 운영 및 관리(20년이상)하여야 함

* 다만, 수행기관의 정관이나 규정상의 이유로 SPC 설립이 불가할 경우 관련사유, 회계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ㅇ 사업 결과 확보되는 데이터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출연금으로 산정 불가함

ㅇ 연차별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사업비

ㅇ 총사업비 중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플랫폼 포함)에 20,000백만원 이상 배정하여야 함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세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외주 용역비 등)는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초과 계상 가능

* 초과 계상 사유 및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근거 제시 必

○ 외부 전문기술(용역포함) 활용 시 관계회사(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 집행 불가

○ SPC와 수행기관 간의 EPC 계약체결 가능. 다만, SPC와 수행기관 간 체결하는 EPC 계약은 용역계약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직접비로 계상하여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또한, 사업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증빙을 구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정산을 받아야 함

- EPC 계약상에 인건비 및 이익은 계상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규정(<별표4> 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비 통장을 연차별로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연차 종료시마다 해지하여 정산하여야 함

- SPC 설립 후에는 SPC 명의의 사업비 통장을 연차별로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연차 종료시마다 해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 본 사업의 특성상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 별도의 이익을 요구할 경우 문제 과제로 판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사무실 임차, 임대, 인테리어, 부지매입,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계상

○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붙임1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 사업 신청 공문	-	1부	주관	-
2	■ 사업 신청서	양식1	1부	주관	-
3	■ 확약서	양식2	1부	주관	-
4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대상별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
6	■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	각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7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각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8	■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3	1부	주관	-
9	■ 수행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4	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
10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5	1부	주관	-
11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6	각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
12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3	■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7	1부	주관참여	- 수행기관 부담금 있는 경우 - 대상별 각 1부
14	■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8	1부	주관	- 지방자치단체 매칭금 있는 경우
15	■ 지방자치단체 협의서	양식9	1부	주관	- 지방자치단체 매칭금 있는 경우
16	■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	주관참여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대상별 각 1부
1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주관참여	- 대상별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18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10	1부	주관	- 실적증명서 첨부
19	■ 분산에너지인프라 시설 부지 확보 확약서	양식11	1부	주관	-
20	■ 컨소시엄 및 SPC 구성계획 (출자비율, 역할, 목적 등 포함)	자유양식	1부	주관	-
21	■ (가점대상) 사업자등록증	-	각1부	주관참여	- 지점일 경우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 대상별 각 1부
22	■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12	1부	참여	- 실적증명서 첨부
-	■ 사업계획서	별첨	1부	주관	-
-	■ 발표자료	-	1부	주관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별첨 작성 양식 참조

** 제출서류 일체 원본 및 전자파일(PDF) 제출

2026년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산업부산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산업공생맵(자원순환 네트워크)을 작성하고, 자원순환시스템(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및 순환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여수)2027년 12월 31일, (포항)2028년 12월 31일까지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대상단지 :** 여수·포항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인근 산단 포함 가능

*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1개의 지역 산단 선택(복수 지역 산단 지원 불가)

□ **선 정 수 : 여수·포항 각 1개 컨소시엄**

ㅇ 선정평가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 **사업비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ㅇ 정부출연금 : (여수)2·(포항)3년간 75억 원

<2026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국비 지원금액(여수)>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6년	2027년	합 계
여수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정부출연금	3,000	4,500	7,500
	매칭금	1,500	3,500	5,000
총 합계		**4,500**	**8,000**	**12,500**

- 정부출연금 중 전담기관 간접비 : '26년 148백만원, '27년 224백만원

<2026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국비 지원금액(포항)>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포항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구축사업	정부출연금	800	3,700	3,000	7,500
	매칭금	400	2,600	2,000	5,000
총 합계		**1,200**	**6,300**	**5,000**	**12,500**

- 정부출연금 중 전담기관 간접비 : '26년 40백만원, '27년 180백만원, '28년 149백만원

* 상기 정부 출연금 및 전담기관 간접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칭금 최소 기준(5,000백만원)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사업비의 연차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 : 50억 원 이상

-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현물 매칭 가능하며,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양식7,8] 제출 必

ㅇ 1차년도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여수30·포항8억 원

* '26년 국비 지원금 중 간접비(기획평가 관리비, 4.95% 내외)를 제외한 금액(여수2,852백만원,포항761백만원) 지원

<2026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산업단지 구축사업 1차년도 지원항목>

정부 출연금 지원항목	1차년도 지원금 비율	
	여수	포항
산업공생맵 구축	5% 내외	5% 내외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구축	20% 내외	15% 내외
자원순환 시스템(플랫폼) 구축(ISP 수립 포함)	20% 내외	50% 내외
자원순환 설비 지원	45% 내외	20% 내외
간접비	5% 이내	5% 이내
전담기관 간접비(기획평가관리비)	5% 이내	5% 이내

* 각 항목별 지원금액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토지·건물·건축·인테리어 조성비는 정부출연금(국비)으로 산정 불가

□ 추진체계

* 사업운영위원회 : 협약체결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며 자체 장비심의위원회 역할을 통합하여 운영

□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산업 공생맵 구축	▸ 기업 간 순환자원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여 연계가능한 자원순환 매칭 네트워크 로드맵 작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여수1차년도, 포항1~2차년도 완료) -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주요 사용 원료,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발생 현황 등 물류 시스템 정보 조사 및 최소 2건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주관기관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혜자(부산물 활용 자원순환 사업 대상)가 되는 것은 불가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 부산물 배출현황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통한 실시간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실현(여수1차년도, 포항2~3차년도 완료) - IoT센서(부산물 배출현황, 생산공정(원료) 등) 설치를 통해 기업의 실시간 자원순환 지원(공장의 부산물 배출현황 파악 → 폐기물 재자원화 → 기업의 원료로 활용) **가.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구축** - 기업별 자원순환 물질흐름 파악을 위한 IoT 센서 및 DB 시스템 구축(10개사 이상) - 산업공생 로드맵에 따라 산단별 주력업종, 부산물 다배출 업체 등 자원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성과 제고 **나. 자원순환 시스템(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자원순환 네트워크 참여기업의 부산물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가공·분석이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연계 - 자원순환시스템(플랫폼) 정보 분석을 통한 유형별 최적 자원순환 수요관리 및 솔루션 제공 -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사업화 지원	▸ 폐기물 재활용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설비를 지원하여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여수1~2차년도, 포항2~3차년도 완료) - 산업공생맵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연계한 자원순환 설비지원 -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부산물, 폐기물, 폐열 등의 원료화 시스템 네트워크 설비구축 - 산업단지 내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정개선,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관련 시설설비구축 -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및 공공성 확산을 위한 수익 재투자 방안 제시

* 상기 사업내용은 필수조건이며,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 제시 가능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자격 : 컨소시엄(주관+참여 N개…)

□ 자격요건 : 주관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7.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9.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3.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매출액 또는 사업비 기준(사업 관리 감독역할 포함) 10억 원 이상인 기관

-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양식9]와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유사사업】
- ■ 자원순환산업 :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산업(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7항)
-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5항)
- ■ 그 밖의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따라 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련한 산업(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참여제한

ㅇ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개인사업자인 경우, 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4. 29.
↓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 8.
↓		
서면심사(사전검토)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초
↓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실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6. 6월 중
↓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6월 말
↓		
수행기관(단지포함) 확정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6. 7월 초
↓		
협약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6. 7월 중
↓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수행기관	`26. 7월 말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수행기관	`26. 7월 말
↓		
중간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26. 9월 중
↓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6. 12월
↓		
(계속)	**(계속)**	**(계속)**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구분	단계별 주요내용
①**사전검토**	▹ 전담기관이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 제한 여부, 매칭금 등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미충족 시 발표평가 배제**
②**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 ▹ 발표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평가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행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총사업비 대비 매칭금 비율, 현금 비율 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사업목표 명확성 (15)	ㅇ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ㅇ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5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5
사업추진체계 ·전략 (50)	ㅇ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컨소시엄 규모, 참여기관 역할, 연계성 등)	5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5
	ㅇ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5
	ㅇ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5
	ㅇ 산업공생맵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개요의 적정성	5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구축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5
	ㅇ 매칭금(지자체 및 수행기관) 비율 및 조달 방안	10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ㅇ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5
성과확산 효과 (35)	ㅇ 구축 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10
	ㅇ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및 수익 재투자 방안, 구축 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15
계		**100**
가산점 (5)	ㅇ 지자체가 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폐기물 DB 연계 확약	5

5 추진근거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수) ~ 6월 8일(월) 15:00까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ㅇ 제출공문을 같이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ㅇ 종이서류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송부

- 모든 서류는 지류 제출 및 PDF 전자파일을 USB 1식 및 메일 제출 필수

* 이메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PDF/한글 각 1부씩 제출

□ **제출서류** : 별표 참조

ㅇ 별표를 참조하여 공문,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 제출서류 일체를 지류제출 및 USB 1개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하고, 접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접수처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산단e사업팀(9층)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heejin4332@kicox.or.kr	070-8895-7208

7 유의사항

□ 사업의 지속 운영 및 관리방안

ㅇ 사업수행('26 ~ 여수'27·포항'28) 완료 후, 사업의 지속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필수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구성하는 등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소유권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단, 자원순환 시스템(플랫폼)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구축 및 소유, 운영하여야 함

□ 수용가 선발 방안

ㅇ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에 의거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순환경제사회 촉진법 제 15조 대상)

ㅇ 신청기관이 20개 이상의 수용가 후보군(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시스템, 설비 지원 등)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후, 적격심사(서류)를 거쳐 최종 확정

* 디지털 인프라(계측장비) 구축은 10개 기업 이상 모집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특성, 수용가 규모 등에 따라 수용가 후보군 협의 가능

□ 자원순환 사업 대상자

ㅇ 참여기관 중 폐기물을 자원순환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관련 사업 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1차년도)하고 활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준용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ㅇ 사업 결과 확보되는 데이터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지자체가 법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자원순환 플랫폼에 연계하기 위한 협조

* 지자체의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확장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 및 18조, 제45조 등에 따른 폐기물 정보'를 플랫폼에 연계 협조 확약 시 가산점 부여

□ 일자리 창출 계획, 수행지역 발전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에 따른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계획과 일자리 연계, 수행지역 발전방안 관련 성과목표를 반드시 제시

* 상생협력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포함되며, 연도별 성과평가에도 반영

□ 성과활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익의 재투자 방안 제시

ㅇ 성과활용기간(5년)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의 확산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원료 저가 공급, 지역사회 환원 등)을 제시

* 선정평가 시 성과확산 항목으로 포함되며, 최종평가 성과활용계획 항목에도 반영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ㅇ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출 방법

ㅇ 주관기관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서를(필요시 실적증빙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ㅇ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증보험 가입

ㅇ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출연금으로 산정 불가함

* 단, 수행기관이 대기업, 공공·비영리기관인 경우 이행보증증권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타 규정과의 관계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우선 적용

- 사업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을 준용

□ 사업비 정산

ㅇ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ㅇ 연차별 사업비 정산은 해당 연차의 사업비 지분에 따라 실시함. 단, 최종연차 사업비 정산 시 누적 반납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각 지분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총사업비 지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함.

□ 기 타

ㅇ 토지, 건물, 건축 조성비는 정부출연금(국비)로 산정 불가능함.

* 매칭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특성상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한 사업임

ㅇ 주관기관의 책임자, 주관 및 참여기관 변경 시에는 전담기관의 승인 후에 변경하도록 해야 함.

ㅇ 사업 핵심인력은 수행기관 구성원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

ㅇ 참여기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관과 책임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및 DB 연계 확약서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직인을 받아야 함

ㅇ 구축 대상(예상)부지가 필요한 경우 부지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함

별표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명	양식	부수	대상	비고
1	▪ 사업 신청 공문	-	1부	주관	
2	▪ 사업 신청서	양식1	1부	주관	
3	▪ 확약서	양식2	1부	주관	
4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각1부	주관,참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대상자 각 1부 제출
5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각1부	주관,참여	
6	▪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	각1부	주관,참여	유효기간 내 발급한서류에 한함 대상자 각 1부 제출
7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각1부	주관,참여	
8	▪ 수행기관 일반현황	양식3	1부	주관,참여	
9	▪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4	각1부	주관,참여	
10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5	1부	주관,참여	
11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양식6	각1부	주관,참여	
12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자체양식	각1부	주관,참여	
13	▪ 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7	1부	주관,참여	
14	▪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양식8	1부	주관	
15	▪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1부	주관,참여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1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각1부	주관,참여	
17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9	1부	주관기관	
18	▪ 부지 확보 확약서	양식10	1부	주관기관	
19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	1부	주관기관	
20	▪ (가점대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폐기물 DB 연계 확약서	양식11	1부	주관	해당시
21	▪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부	주관기관	
22	▪ 사업계획서	붙임2	1부	주관기관	PDF/한글
23	▪ 발표자료		1부	주관기관	

* 별첨1 제출서류 양식 및 별첨2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